

제417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0일(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4)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1)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1)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6)
-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26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5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1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8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6)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7)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6)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7)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9)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9)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2)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8)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3)

-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8)
 23.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정혜경 의원·김준형 의원·김영호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0699)
-

상정된 안건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4)	4
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1)	4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1)	4
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6)	4
5.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262)	4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56)	36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10)	36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85)	36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6)	37
10.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7)	37
1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	37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	37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	37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	37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6)	37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7)	37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9)	37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9)	37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2)	37
2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8)	37
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3)	37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8)	37
23.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정혜경 의원·김준형 의원·김영호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0699)	37

(10시00분 개의)

○소위원장 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첫 회의인 만큼 출석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지요.

○**김기웅 위원** 일단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쟁점 법안이 많은 상임위가 돼서 서로 진지하게 협력적으로 토론하면서 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요한 위원** 인요한입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현안도 있지만 미국의 대선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익을 어떻게 잘 챙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여와 야 관계없이 같이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정치도 초보고 특히 법안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선배 위원님들의 지도를 잘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흥기원 위원님.

○**흥기원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위성락 위원님하고 차지호 위원님은 도착하시는 대로 인사말씀 듣도록 하고.

그러면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 소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고 저 역시 소위원장으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지호 위원님 도착하셨는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인사말씀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첫 회의인 만큼 열심히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래서 당부 말씀은 드렸지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 분야의 법률을 다루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입법이라는 수단이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최후의 수단 같은 것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교 주체가 항상 보통 정부다 보니까 정부에 재량을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미국의 입법 사례들을 봐도 항상 외교의 유연성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급적 여야가 합의를 해서, 뭔가 컨센서스를 통해서 우리가 입법을 추진해 가야 되겠다는 것, 그래야지 소위를 통과한 법률이 결국은 법률로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면서 우리 위원회가 심의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성락 위원님 오셨는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락 위원** 우선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 왔지만 열심히 참여해서 법안소위 활동에 성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5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방법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교부, 통일부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4)
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1)
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1)
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6)
5.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 번호 2200262)

(10시05분)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항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강인선 외교부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사조력법 개정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국위를 선양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그 행위로 훈포장을 받은 경우에는 영사 조력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국위선양 행위 중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영사 조력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위선양자의 공적을 예우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외국민 중 국위를 선양하여 상훈을 받은 사례는 현재 고 김홍빈 대장 사례 외에는 파악하기 어려운바 개정안은 김홍빈 대장의 사례에 한정되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의 개정안에 면출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부칙에서는 영사 조력 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 규정을 2021년 4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면 이 법의 제정 시행일인 2021년 1월 16일로 수정을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부처 의견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를 제외하고 법제처나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현재의 개정안은 수용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위원회에서 논의된 수정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국가로부터 비용 부담을 받기 위해 역으로 훈포장의 수여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상훈이 왜곡되어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부칙을 이 법 제정 시행일인 2021년 1월 16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그때 당시에도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정부 측은 법안소위 당시에 지금 이 개정안과 유사한 수정안의 내용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원 대상 및 범위는 국위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훈포장을 받은 경우에 영사 조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훈장 등의 수여와 국위선양 행위로 인한 사건·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법 적용 시점은 법 제정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고 김홍빈 대장 사건·사고 현황은 2021년 7월에 김홍빈 대장이 브로드피크를 정복하고 하산하다가 조난사고를 당해서 당시 세 차례의 헬기 투입 등에 사용된 비용이 모두 6800만 원이고 외교부가 파키스탄에 선지급한 후에 구조비용을 광주시산악연맹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1심 판결의 결과는 일부 국가, 그러니까 원고에 승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환금액을 2500만 원 정도로 해서 일부 승소를 받았습니다만 다시 국가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 요건이 해외 위난 상황이 아니다라는, 해당하지 않아서 1심이 이를 오인했기 때문에 항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은 마지막에 부칙 신설입니다. 이것은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훈장의 종류 및 명칭이고요. 7쪽에는 포장의 종류 및 명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강인선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고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후 하산 중에 산악 조난사고를 당했습니다. 파키스탄 항공구조대 헬기를 통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결국 찾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민형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고 김홍빈 대장의 사례와 같이 국위선양 활동 중에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으로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외교부, 법무부, 법제처가 각기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안한 수정안의 내용과 유사하여 관계부처들은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로부터 영사 조력 비용을 면제받기 위해 훈포장의 수여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법안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또한 동 개정안의 내용 중 소급 적용일에 관해서는 이번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잘 설명된 것과 같이 적용일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김기웅입니다.

논의된 내용은 들었고 김홍빈 대장님 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사실은 좀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에도 일부는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법이 특정한 사안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성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소급 적용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국위선양 행위한 사람 모두가 아니고 상훈을 받은 사람이어야……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 11조 3항 보시면 훈장은 개인에게 한정되고 어떠한 특권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만일 이 법이 되면 사실은 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약간의 특혜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냥 훈포장 빼고 국위선양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비용을 부담해서 해 준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 나가서 하다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훈장 안 탔더라도 정부가 국위선양 행위 중에 생긴 거니까 좀 도와주자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대상 범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대상을 좀 어떻게 한정, 이런 특정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 보니까 차라리 이 법을 할 것 같으면 보다 범위를 명확하게 넓혀서 해외에서 국위선양 중에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 준다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특정 케이스에, 그것도 훈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니까 법 자체가 제가 볼 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아까 헌법 11조에 좀 위반될 소지도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김기웅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 측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죄송합니다. 잠깐, 못 들었습니다.

○**이용선 위원** 방금 김기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훈포장으로 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 공헌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냐, 저도 그게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부 측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일단 아까 김기웅 위원님 말씀 주신 것, 헌법불합치 우려 관련한 그 부분이요. 그것에 대해서 법제처는 헌법 제11조제3항, 상훈법 및 관련 법률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어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비용 상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반드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가 최종 수용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그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명확해야 되는데 넓힐 때 우리가 국가에 뭔가 기여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형 위원**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소위원장 김건** 제가 위원장으로 있어서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준형 위원** 예.

○**소위원장 김건** 김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형 위원** 아무래도 해외 사례는 지금 어떤지 좀 비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유사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홍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원 위원** 질문인데요. 지난번 심의할 때 논의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 법문을 보면 국위를 선양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그 행위로 훈포장을 수여받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하고 사고를 당하고 나중에 훈포장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 아닙니까? 되게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평상시에 산악인으로 여러 가지 국위선양 하는 행위를 많이 해서 훈포장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디를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런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생겼다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사고를 당해서 비용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상을 받았으니 비용을 면해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이치에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훈포장의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후에 어떤 형태로든 아무리 낫은 등급의 포상이라도 받으면 비용을 국가가 해 주고 그것을 못 받으면 안 해 주고 이게 되게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건**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바로 그것인데 이 법은 특정한 사안, 물론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 그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만 해결하고 나면 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특수한 경우의 입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입법이라는 게 그 한 건 소급해서 해결해 주자고 하는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합리적이지 않고 실제로 해외에서 열심히 국위선양 하시다가 이런 피해나 불행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당연히 본인에게 모든 비용 대서 해라라고 하기보다는 정부가 일정 부분을 도와주는 것은 진짜 일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번에, 차제에 그 부분을 좀 더 어렵더라도 문구를 잘 만들어서 입법을 해놓는 것은 제가 볼 때 일리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들 때 이번에, 차제에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특정 사안보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통과시키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한번 위원님들 의견 내신 것을 참고해서 외교부에서 좀 더 합리적인 안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 제 의견은 그거예요.

○**소위원장 김건** 또 의견 있습니까?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국위선양 하는 행위가 훈장을 받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수단에서 일했던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다가,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하시다가 굉장히 가난하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돌아가신 시절에 운구할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지에 묻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사후에 훈장이나 이런 걸 받지를 못하시면 사실 굉장히 먼 타국에 이렇게 홀로 묻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국위선양 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를 조금 폭넓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다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훈포장을 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애매한 다른 여행 중에 사고당했을 때는, 그 부분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인지 공적인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받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특혜가 되고 받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국위선양을 해도 못 받는 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님, 적용 범위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무슨 상훈

을 받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하다가, 그 행위가 말하자면 훈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국위선양 행위로 훈포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받았던 훈포장은 영사 조력을 받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홍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원 위원** 그리고 여기 19조 1항에 보면 영사 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입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이 건이 명확하게 해당이 되나요,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분이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에 헬기 띄워서 시신 찾고 그다음에 운구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이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일단은 조난을 당해서 시신을 수습할 때까지는 어떻든 구조 행위입니다. 구조 행위니까……

○**홍기원 위원** 그러니까 신체의 보호로 보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아까 운구비용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이 적용이 된다면.

○**홍기원 위원** 아무튼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정말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케이스 같습니다.

저도 개인에 대한 구상권 문제는 안타깝기는 한데 사건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이만 종결을 하고 일단 여러 문제점이라든가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 회의 때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하면서 계속 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관된 내용들이므로 병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8쪽입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일단 김준형 의원님 안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또는 출국이 금지된 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성락 의원님 안은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과 출국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고, 조정식 의원님 안은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무죄추정 원칙과의 충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외교적인 문제이므로 특임대사의 경우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김준형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특임공관장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교관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 전문가를 특임공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외무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특수한 공무원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모든 공관장의 자격심사는 외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외국어 능력 등을 평가해서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임공관장 역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또는 법원 판결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7월 기준으로 공관장 159명 중에 특임공관장은 32명입니다.

검토의견은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서 공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 담임권이나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충돌 소지 또 대통령 인사권의 제한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은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직위해제 대상자 또 조사·수사 중인 자에 대한 임명 배제와 두 번째는 별도의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대면 개최, 회의록 공개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김준형 의원안은 제4조입니다. 특임공관장에 대해서 제5항을 신설해서 ‘임명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출국이 금지된 자는 공관장에 임명될 수 없다라고 해서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형태고요.

25조를 보시면 위성락 의원님 안은 ‘자격심사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의견, 사실상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위해제 대상자가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14쪽에 보시면 출국 금지자는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셨습니다.

15쪽입니다.

조정식 의원안은 25조의2를 신설해서 특임공관장 자체에 대한 자격심사 절차를 현재의 절차와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이것은 관련 규정들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쪽까지 관련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 장인선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김준형 의원님, 위성락 의원님, 조정식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 발의하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관장 임명 요건과 절차를 더욱 염격히 하고 공관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합니

다.

김준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은 공직 관련 사건 등으로 조사·수사 중이거나 출국 금지된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대상자이거나 출국 금지된 사람을 공관장 후보에서 제외하고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대면 개최 및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조정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은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국회 추천 인사 등도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공관장 후보자는 외교부 및 타 부처 공무원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와 유관기관의 인사 검증을 받게 되는 등 공관장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별도의 자격심사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이나 검증 요건 추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조사·수사 중이거나 직위해제, 출국 금지 등을 사유로 공관장 임용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과잉규제에 해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공관장의 임명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공관장 후보자 임명 자체가 고도의 외교활동인 점까지 감안하면 별도의 자격심사기구를 만들어 국회의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자칫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외교업무 수요로 인한 공관장 인사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특임 여부를 불문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의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 공개 의무화는 공정한 심의를 저해하고 후보자 및 제3자와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 그리고 2차 가해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외교부는 금번 개정안과 같이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금번 개정안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도 공관장 임명 과정에서 철저한 자격심사를 통해 공관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충실향하고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제가 대체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아주 폭넓게 엄격하게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문제가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고, 우리가 지난번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실 지금 호주한테 상당한 결례를 이미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되는 것이고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이 해결되고 난 뒤에 보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금 외교부 차관께서 말씀하신 행정부 수반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 제한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대사도 청문회 하지요? 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청문회를 할 정도로 의회도 대사 임명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제한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소위원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 대통령의 외교의 유연성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또 반면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권의, 외교권의 독점이 있는 나라도 드뭅니다, 임명권뿐만 아니라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논의하는 기구 조차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격심사위원회를 더 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평크가 난 거잖아요. 평크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렇게, 저는 특임대사를 보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것은 맞다고 보지만 이러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또 다른 위원님……

인요한 위원님.

○**인요한 위원** 미국 국회의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마치 신원조회 비슷한 겁니다. 법을 많이 어겨서, 법을 큰 것을 어긴 것을 찾아내서 이 사람이 부적절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여기 대한민국에서 딱 한 번 고소·고발을 당해 봤는데 물론 무죄, 무혐의로 다 끝났지만 상당히 그 기간에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제 질문은 딱 하나예요. 만약에 누구를 임명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면 누가 임명받자마자 고소·고발을 해 버리면, 법을 만들어 버리면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한 생각이고.

무죄원칙이 참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선 무죄고 이미 공판 심사를 받은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꼭 이것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 홍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원 위원** 질문인데요. 이렇게 입법 발의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차관이, 위원장이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특임공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심사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 정부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 출국이 금지된 사실을 몰라서 임명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공관장 심사할 때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국정원 신원조회도 다 거치는데 그러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출국 금지는 법무부장관이 하는 거지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고위 인사 검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특임공관장도 거기 검증 대상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데 법무부에서 검증을 하는데 왜 법무부장관이 내린 출국 금지 여부를 파악을 못 했는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저희가 알기로는 출국 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수사상의 비밀이고 고소나……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데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신원조회할 때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사실들을 다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내린 출국 금지를 체크를 못 하고 인사 검증을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인사 검증이 매우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 부분은 외교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 확인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아니지요, 차관이 자격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여기 뒤의 출국 금지 사유를 보면 사실 특임공관장이 아니라 공무원도 당연히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출국의 금지 대상이 여섯 가지 있는데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벌금이나 추징금 내지 않은 사람, 4. 세금 안 낸 사람, 5. 양육비 안 준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출국 금지하는데 이런 사람이 체크가 안 돼 가지고 특임공관장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외교부에서 법무부에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소관 부처가 아니라고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인사 검증의 부분은 소관 부처가 다르고요. 외교부에서 말하는 자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외교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 리더십, 어학 능력, 외교적 능력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외교부는 전혀 검증을 못 한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외교부에서 검증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법무부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법무부에 문제 제기 안 했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홍기원 위원** 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국 금지하는데 그런 사실을 법무부에서 검증을 못 해 가지고 외교부에서 특임공관장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령을 냈는데 그것을 법무부에 확인하거나 문제 제기 안 했냐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저희가 사전에 하지 못했습니다.

○**홍기원 위원** 아니, 그 이후에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사실 굳이 법에 이렇게 규정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다 걸러질 것 아니에요. 정부의 입장도 출국 금지된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닙니다. 다만.....

○**홍기원 위원** 출국이 금지될 정도의 중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 안 할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런데 출국 금지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고 그 안에도 사실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출국 금지자는 다 안 된다고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인요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요한 위원**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걸 유식한, 소위 영어로 베팅(vetting)이라고 그래요, 베팅. 그 사람을 스크리닝해서 걸러내는 건데 지금 대답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법이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저대로 외교부에서 법무부에다가 물어보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이 범죄, 현재나 과거에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 게 없어요, 외교부에? 그러니까 법무부에 이 사람이 올라왔으면 베팅하고 여기에 또 베팅하고…… 베팅(betting) 아닙니다. V입니다. 내기하는 것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성락 위원님.

○**위성락 위원** 위성락입니다.

저는 법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 안을 내게 된 것은 이종섭 건에 촉발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출국 금지된 사람이 공관장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작은 문제고 특임공관장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어 왔느냐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파적인 고려에 따라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역대 정부를 다 털어서 특임공관장제도가 오남용된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보훈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옥석이 안 가려져서 아무나 공관장으로 가게 되고 그 피해는 외교부에만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외교 전반에, 국익에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자.

제가 낸 법안에는 물론 수사대상이라든가 출국 금지 대상자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자격요건을 강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안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공관장 인사권 고유권한이다, 솔직히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처럼 어폐가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 마나 한 말이에요, 맞는 말 같지만.

그러면 고유권한이면 무한정 아무런 검증 없이 통제 없이 행사해도 되는 것이냐? 대통령 각료 임명권 있습니다.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하는 일이 있고 언론이 하는 일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유권한이라는 데 너무 방점을 둘 필요 없이 우리가 두어야 될 방점은 특임공관장제도를 이대로 운영하지 말자, 개선하자,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가령 일반공관장을 심사할 때 그 사람이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 수사대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안 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다. 조금만 흠이 있어도 이번에 못 나간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이종섭처럼 아주 현저한 케이스가 있

었기 때문에 차제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분하고 다르게 회의록 공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 또한 저는 자격요건 심사를 더 철저하게, 나쁘게 말하면 야료 없이 하도록 보장하려는 겁니다. 특임공관장으로 보내야 될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검증도 없이 그냥 뚝딱 서면으로 하거나 아무런 체크 안 하고 또 내보내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통제하려면 공개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고요.

공개에 대한 사례는 전례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군인사법 54조의5에 보면 회의록의 공개는 공개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공개가 기본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자는 거고 제가 쓴 랭귀지 중에서 조금 과하게 공개를 강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완화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공개가 기본이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임공관장제도를 지금처럼 운영해서 자격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자격심사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감사합니다.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저는 이게 외교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실패 사례잖아요, 정권을 떠나 가지고 한·호 관계를 보면.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임공관장을 임명할 때 사실 대통령실에서 그냥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저항할 힘이 없는 것을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 저도 외교부를 잘 알지만 외교부에서 죽 커리어로 외교관이 되었던 사람들은 이런 문제 있으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통과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외교부의 전문성을 살리는 외교부를 돋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타당하고요.

아까 인요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너무 확대해석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 사람 공관장 안 시키려면 막 고소하면 된다가 아니라 법안을 보시면 공무상 이유고 국가보안법, 헌법 위배, 중차대한 것에 대한 위반으로 수사에 들어간 자입니다. 아무나 고소했다고 그 사람이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건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차관님 말씀에 따르면 외교부에서 낸 의견은 완전히 엉터리예요. 여기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에 대한 외교부 의견은 ‘기존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다’. 아니, 외교부 자격심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하나도 걸러내지 않고 외국어 능력이나 등등 이런 것만 심사하면서 여기랑 기능이 중복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의견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차관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출국이 금지된 정도의 사람이면 당연히 공관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외교부에서 검증 못 하고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외교부의 태도가 저 정도면 법에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이나 출국 금지된 사람은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임명 안 하겠다, 안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외교부는 그것은 모르고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다, 법무부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외무공무원법에 이런 것 넣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법에 이것을 넣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려운데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그것은 외교부에서 할 수 없는 거다, 알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걸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인요한 위원님.

○**인요한 위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사람을 고소·고발하는 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 때그때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고소·고발을 당하면 못 가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한 발언입니다. 다른 확대해석은 하지 말고, 제가 한번 그런 걸 당해 봤기 때문에. 너무 쉽게 고소·고발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소위원장 김건**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강인선 차관께서 자격심사기구의 역할을 정확하게 잘 숙지를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홍기원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실제 대통령실에서 선정한 인사에 대해서는 절차상 그냥 통과시켜 주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반영하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법규에는 수사 중인 자를 배제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실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수사 중인 게 확인이 되면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인사 절차를 중지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연 이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저는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정말 고소·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넓다, 물론 대상 법을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사 중이라는 특성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출국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직위해제 대상 이런 것은 아주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고 또 정부 부처의 심의와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중대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사례가 발생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특임공관장이 늘어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흐름인데, 자격도 안 된, 어떤 전문성을 넘어서서 도덕성 기준이 안 된 사람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인 외교관으로 가는 것은 더욱더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외교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임공관장을 엄격히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이나 자격심사 강화해야 된다는 것의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예전에 북한에 가는 사람들, 방북 신청 들어오면 승인할 때 돌려봅니다. 부처에 돌리면 내사라는 게 있고 조사가 있고 수사가 있고 종류가 많이 있는데, 내사는 저희가 받을 수는 없고요. 내사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수사 중인 경우는 관계부처에서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이용선 위원님처럼 여기에 무슨 구체적인 것을 써서

이런 사람들은 하자 이렇게보다는 차라리 아까 의견들이 외교부에서 자격심사에 필요할 경우에—지금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관계부처, 법무부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든가 해서 그걸 외교부가 할 수 있도록 아예 법 규정을 넣어 주는 게,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서 그 부분을 심사에서 반영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해 주는 게 좀 더 포괄적이고 외교부가 재량을 갖고 엄격하게만 해 준다면……

법무부가 사실 출국 금지한 거 본인도 모르거든요, 실제로. 나가다가 공항에서 알고 이 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요청한다고 제대로 알려줄지도 저는 사실 자신이 없고, 법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외교부가 그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실어 주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김건**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위성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임 공관장이 사실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외교통일위원회니까 외교와 통일이 어떻게 잘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국내 정치의 문제가 외교, 재외공관으로 확대되는 것들은 조금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것 같고.

특임공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외교부에서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통제 가능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말씀하셨듯이 법무부나 이런 데에서, 타 부처에 있는 자료들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특임공관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 대통령 인사권을 얘기하셨는데, 외교부 안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검증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부를 위해서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저희 외교 문제 까지 확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걸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는 조정식 의원님의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들이 저희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외교부 안에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될 수 없었던 근거들은 또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분별하게 기소가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출국 금지나 직위해제 대상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규정한 거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해외로 도피하거나 나갈 수 없는 것을 규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특임공관장이 되는 법들이 상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법들은 충분히 준수할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사 중인 부분은 저는 빨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나 이 자체를 외교부에 다시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현재 시스템에서 외교부가 특임공관장, 특히 대통령의 인사 행위로 내려오는 것을 막을 만한 힘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처럼 수사 중인 것을 빼더라도 따로 법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성락 위원님.

○**위성락 위원**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부에서 일반외교관이 공관장이 되려고 하면 일생 동안 해당 업무를 준비하고 연마합니다. 그리고 공관장이 되기 위한 노력도 준비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자격심사를 해서 안 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특임공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권하고 어떤 연계를 맺어 가지고 자격심사를 아주 간략하게 하면서 공관장에 임명이 됩니다. 과연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관장이 되면 많은 외교부 직원들이 그 사람 밑에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일도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외교부는 조직이 유한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엉망으로 만들어도 큰 분란이 안 나는 곳이에요. 뒷소문은 나는데 큰 분란이 안 납니다. 사실 조직이 좀 강력하고 터프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무슨 권력 부서들 이런 데.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되면 금방 분란이 나오고 그 사람이 퇴출되지만 외교부는 퇴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더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가게 해야 됩니다. 가고 나면 통제가 안 됩니다. 온갖 해악을 저지르고 나라에, 외교부에, 국익에 손해를 다 끼친 후에 그냥 뒷말만 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권마다 반복이 됩니다.

저는 지금 결코 정파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진보 정부도 그런 일 했으면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보수 정부가 그런 일 많이 했으면 더 이상 하면 안 되게 제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좀 마이크로 하게 얘기를 해 보면요, 일반공관장 후보의 경우는 공관장으로 나가고 싶으면 먼저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심사를 받아서 심사가 통과된 사람만 와서 갈 곳을 배치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임공관장은 먼저 대통령실에서 정해져 옵니다. 자격요건 심사를 먼저 거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요. 오면 그걸 가지고 요식행위로 자격심사를 통과시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심사부터 해야 됩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판단을 해야지 시켜 줄 사람다 골라 가지고, 무슨 장사가 그것을 제대로 자격심사를 하겠냐 하는 거지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자격요건 중에 최근에 특임공관장 자격에서 굉장히 경시되는 부분이 외국어 능력이에요. 외교관의 경우는 외국어능력을 엄하게 보면서도 특임공관장은 외국어능력을 잘 보지 않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제 기억이 틀리면 교정해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예요. 그전까지는 특임공관장도 일정한 어학 겸종을 통하여 어떤 기준을 통과하도록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그게 제 기억에는 서울대학의 무슨 어학연구소 이런 데 가서 누구나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외교부 직원도 해야하고 특임공관장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불만들을 하고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외교부가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외부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제도다 이런 식의 담론이 약간 형성이 되어서 없어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어 능력 거의 보지 않아요. 시행령에, 외무공무원임용령에 외국어 능력을 본다고 써 있지만 실제로 운용상 특임공관장 경우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외국어는……**

○**위성락 위원** 외국어 능력에 대한 얘기만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외국어 능력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공인된 어학성적 이런 것을 갖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취득 학위가 있거나 국제협력 분야에 근무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는 외국어 관련 업무일 수도 있고 저술이나 여러 가지 관련, 그러니까 꼭 외국어 시험 점수가 아니라 그걸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위성락 위원** 마지막,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가늠한다는 것은 너무나 관대한 자격심사 과정이에요. 외교부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외교부 직원은 해외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20년 한 사람도 또 뭘하게 시켜요. 그러면 외교부 직원이 해외 근무했는데 그걸로 미루어 짐작해 가지고 자격요건을 부여해도 되지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학 갔다 왔다 해서 외교관으로서, 공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도 다시 보완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요건 심사에 대한 제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특임공관장이 아닌 공관장, 그러니까 외교부 직원들 중에서 임명하는 공관장이 직위해제 대상이거나 또는 출국이 금지된 경우 공관장이 될 수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외무공무원법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근무성적 불량자, 중징계 이력자는 자동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도덕성,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데요. 외무공무원이 출국 금지 대상이거나 또는 직위해제 대상인 경우 공관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특임공관장과 마찬가지로 같은 인사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외무공무원임용령을 보면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부적격 결정을 받습니다.

○**홍기원 위원** 아니, 자꾸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되는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 또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외무공무원이라면 공관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현재 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면 아예 차제에 특임공관장만 규정할 게 아니고 외무공무원법에 전체 공관장 심사 제외 대상에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차관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외무공무원인데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라도 공관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기준이 똑같으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저희가 출국 금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우려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국 금지에 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중간적인 것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기원 위원** 제가 아까 읽어 드렸잖아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이 출국 금지하는 대상이 여섯 가지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인 사람은 당연히 공관장이 되면 안 되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런데 아까 인요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소·고발을 당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출국 금지가 되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기원 위원** 아니,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하는 요건이 여기 여섯 가지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고소·고발과 출국 금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지금 출국 금지 대상은 형사재판 중인 사람 또 아직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세금 안 낸 사람, 양육비 안 준 사람 또 공공의 안전이나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 법무부장관이 금지하는 건데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정도의 사람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잘못한 거지요.

원래 이렇게 법을 개정하나 마나 할 때 있어서 직위해제 대상이나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당연히 공관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걸 법에 넣는 게 좋으냐 아니면 행정 절차로서 그런 걸 거르도록 하는 게 좋으냐 그런 판단의 차이로 봐야지,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라도 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둬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 그리고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외교부에서 하는 자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에서 하는 인사 검증과 말하자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써 저희가 특임공관장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여러 가지 장치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좀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원 위원** 제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외교부차관의 인식이 저렇다면 당연히 법에 이걸 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촉발은 이종섭 전 장관 때문에 시작됐지만 제 상식으로, 저도 외교관 출신인데 공관장을 하는데 출국 금지 대상이거나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대상이 공관장이 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경미한 사안으로도 공관장이 못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은 출국 금지 대상 중에도, 법무부장관이 출국 금지를 했는데도 그 사람 중에서도 공관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둬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자꾸 말씀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외교부의 인식이 저렇다면 당연히 법에 규정을 해서 그런 분들은 공관장이 못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굳이 특임공관장으로 한정할 필요도 없고요 공관장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형 위원** 제안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성락 위원님 말씀하시고 차지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준형 위원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성락 위원** 외교부의 검토의견 중에 서면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 회의록 공개 시에 공정한 심의가 곤란하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 물어보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섭 씨의 경우에 서면 회의를 했습니까 대면 회의를 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서면 회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락 위원** 서면 회의였겠지요.

그 서면 회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요청합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회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위성락 위원** 공정한 심의를 방해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너무 잘 아시지만 자격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고 만약에 그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이것이 전제된다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자제하거나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위원**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개인정보 가리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를 돌아가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특임공관장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아야 된다, 무자격자가 정치적 페이버(favor)로 들어오는 일은 막아야 된다, 그런 보다 더 큰 이익을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해야지 어떻게든 안 하려고 개인정보도 들이대고 공정한 심사 이렇게 자꾸 피해 가려 하지 마시고 우리 외교를 생각하고 또 외교부도 생각하고 국익도 생각하고 그래서 좀 대국적으로, 사소한 고려보다는 큰 목표를 향해서 대국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공정한 심사를 저해한다고 하는 것들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면 군 인사법에는 '군 인사 관련 회의록은 공개를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도 또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비밀 속에서 불공정이 이루어지고 야합이 이루어지고 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감추게 되면, 그래서 이게 서면으로 뚝딱하고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게 정부에 들키 된 거 있습니까? 윤 대통령한테 들키 된 거 있습니까? 선거에 들키 됐나요? 되지 않습니다. 정도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한 가지 위원님들 주의해 주실 게 보니까 누가 누르면 자기 것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러면 자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시고 발언해 주셔야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여기는 국회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작은 무역회사나 여행사에서 알바로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물어봐요. 당연하잖아요. 국민들은 취업할 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언제나 그 모집 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들은요. 그런데 외교부 재외공관장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발생했는데 그것조차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이게 법안 반영이 안 된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실 이 법안들 올라오는 것 보고, 특히 국가공무원법의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도 당연히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외교관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국민들도 전혀 납득을 못 할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이 만약에 논의가 나왔는데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외교관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나가면 이것은 전체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구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기관인 외교부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취업이 가능하다는 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국민이? 그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조금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건 다음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저 제안을 합니다. 아니, 공관장으로 외국에 부임하는 데 못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부임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부당하게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면 그건 해소하면 되지 한 번 내려지면 해소 못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큰 피해처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의견이 접근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양보하는 것은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수사 중인 부분을 뺀다면 지금 두 가지, 직위와 출국 금지 이것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외교부에서 그렇게 잡아낼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국익에도 외교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저는 통과시킬 것을, 하루종일 논의를 할 수 없으니까 동의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수정안 제출할 것을 건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인요한 위원님.

○인요한 위원 오늘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통령이 이런 분을 임명했을 때 스크리닝 시스템이 좀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시스템이 중요해요. 이게 시스템화되고, 지금 여기 나오는 법령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밝힐게요, 아까 얘기 안 했던 것. 제가 한 20년 전에 교육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명예스러운 자리를 받게 됐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 가지고 특별한 건 아니지만 ‘당신 지금 고소·고발 중이니까 거기 못 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스템은 강하게 하되 고소·고발을 상당히 쉽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그 사람이 무죄원칙이라는 것을, 저도 무죄였고 무죄로 끝났고 그렇지만 그게 악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고발되니까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유죄인처럼 취급되고 어디 명예스럽게 가야 될 곳에 못 가게 되고 이런 것이 걱정돼서, 단 시스템화되는 건 적극 찬성합니다, 더 강화되고. 위에서 아무리 높은 분이 임명해도 베팅 시스템이 제대로 된, 그렇지만 동시에 고소·고발이 좀 쉽게 되는 곳에서는 ‘당신은 고소·고발 중이니까 이런 데 못 간다’. 이것 당해 본 사람은요 얼마나 기가 차고 억울한지 그것 좀 생각해 달라, 여기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일을 해본 입장에서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드리면 지금 출국 금지 말고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인권 유린 관련된 무슨 일을 벌여서 세간에서 굉장히 의혹을 받고 있다거나—수사는 안 받지만—그 나라와의 관계에서 과거에 무슨 이상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 나라에서 뭔가, 그러니까 공관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사유는 정말 많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예를 드신 것 말고도 정말 많을 수 있어서, 물론 커리어 외교관들은 그런 일이 적지만 특임공관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검증하기가 어렵다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 법에 무죄추정 이런 얘기도 있지만 특정한 걸 명시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또 포함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의 의견은 여기 임용령이 있지 않습니까? 검증해서 부적격자 판단하는데 아까처럼 공무 피담임권이라든가 우리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용어들을 나열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제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에 어떤 단어를, ‘출국 금지’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포괄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여기 임용령의 자격심사 밑에 부적격자 내용으로 집어넣어서—1항, 2항 중에—그래서 그것을 외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법에 넣든지 해서 그걸 차라리 해 주는 게 좀 더 폭넓고 포괄적이고 공관장의 자격을 좀 더 외교부가 제대로 할 수 있다, 인사 검증 플러스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은 저의 일 경험으로는 좀 더 나을 것 같다. 법에 그렇게 딱 명시해 버리면 다른 건 또 빠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고민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건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이제 충분히 토론을 한 것 같고요. 자격조건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업외교공무원이 아니라 특임공관장, 특임공관장의 위치는 고위공직자고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만큼 의견은 좀 모아진 것 같으니까요, 물론 김기웅 위원님이 같이 좀 포괄적인 개념과 규정을 조금 찾아보자라는 말씀도 좋은데 정리 작업을 하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성락 위원님.**

○**위성락 위원** 좋습니다. 정리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출국 금지는 그중의 하나입니다. 문제가 되는 자격요건의 하나일 뿐이지 그게 다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또 다른 역량, 자격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저는 그중의 하나가, 꽤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외국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외국어 능력을 좀 엄하게 보다가 이명박 정권 아래로 그게 없어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관련 규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 도덕성, 교섭 능력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묘한 말이고 오남용되기 시작하면 끝없이 오남용되는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피해야 돼요. 이런 걸 집어내서 하는 게 우리 국회의 역할이에요.

‘종합적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외교부 쪽의 답변은 뭐냐 하면 ‘종합적이라는 건 외국어 능력이 좀 떨어져도 도덕성, 교섭 능력 등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다'.

그런데 외국어 능력이 제가 아주 높은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교부의 직원들이 심사받는 정도, 외교부 직원 중에서도 몇십 년, 20년을 일했지만 공관장 자격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정받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가상적으로 외국어 능력이 그보다 훨씬 안 되는데 공관장을 하고 싶어서 정치적으로 로비하는 사람은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외국어 능력이 떨어지는데 도덕성이 높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컨대 무자격자를 보내서 나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의견 말씀드리는데요. 적어도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대상이나 또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당연히 공관장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일반 공관장이든 또는 특임이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난번에 이종섭 대사 임명할 때는 ‘그때 출국 금지된 줄 몰라서 임명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또는 그걸 명확하게 하자 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출국 금지 대상인 사람, 출국 금지 중인 사람을 공관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해외로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공관장으로 임명해요, 공관장은 해외 가서 근무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잘못 얘기하신 거고요. 만약에 출국 금지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이 확인해 보니까 억울하다, 이게 잘못된 거다 하면 금지를 풀고 임명하면 되는 거지 ‘출국 금지 대상 중에도 혹시라도 공관장 임명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규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안을 정리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건** 강인선 차관님.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위원님들 주신 말씀 그리고 지적, 우려는 제가 깊이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안 취지 자체에는 저희가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관장 임명 과정에서 철저한 자격심사를 통해서 공관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충실히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 뜻인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추가적으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좋은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검증 절차가 지금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그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임공관장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앞으로 개선할 방안 그다음에 전반적 자격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자료 확보 등 절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좋은 의견들이 있으셨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부처 의견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걸 기초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다른 전반적인 걸 좀……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이거 이거 검토가 아니라 저는 이 법안에 관해서는 수정안이 적어도 다음 회의까지는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회미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아까 제가 그 부분은 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문안을 해서 적어도 오늘 끝까지나 아니면 다음까지는 수정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그리고 수정안은 외교부에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답변한 걸로 봐서는 여기에 규정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오늘 논의된 걸 바탕으로 수정안을 준비해 가지고 다음번 회의 때 그걸 기초로 논의하도록 해야 맞는 거지, 외교부에 답을 주라고 하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대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건**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우선 홍기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약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별도의 자격심사기구를 두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충분히 합의가 좀 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의록 공개하고 관련된 것도 견해가 지금 정부 측하고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면 논의하더라도 적어도 자격조건 강화 부분은 명확히 정리해서 다음 때는 수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지금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조건 강화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대안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일단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 소관 안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22쪽입니다.

결의안은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자료 제공 및 유치 실패 원인에 관한 정부의 분석과 설명을 촉구하고 또 실제 결과와 격차가 커던 오판의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고 또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약속 및 재외공관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촉구하고 평가와 반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실시를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엑스포 유치 과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향후 추진되는 국제행사 유치 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ODA 확대 또 재외공관 설치 계획 발표 관련해서 정책과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국정조사의 안건으로 정할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의 의견이 2개가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외교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23쪽입니다.

결의안의 제목과 관련해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일단 공식 용어라서 이 용어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표권을 행사한 국제박람회기구 165개 회원국’이라고 문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박람회 유치 투표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24쪽에 보시면 또 부처 의견 2개를 추가적으로 외교부에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개국에 공관 신설을 발표했는데 상호주의에 따라 룩셈부르크 등 8개국 그다음에 기타 사유로 4개국에서 공관 신설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교국 192개국 중에 우리 공관이 설치되지 못한 73개국의 90% 이상이 BIE 회원국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 장인선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장인선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 등 부산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성원을 받으면서 한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총력 교섭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에 큰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초당적인 의원외교를 펼쳐 주셨습니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 바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교섭 대상국을 직접 방문하셨고 의원친선협회 간 교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치 교섭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BIE 총회에 참석하시는 등 여러모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결의안은 이번 유치 교섭 경험을 발판 삼아 향후 중요한 국제행사 유치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결의안이 유치 실패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치활동 경과 등에 대해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국회 보고를 충실히 해 왔습니다. 또한 투표 종료 후에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 유치 실패에 대한 입장은 이미 표명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ODA나 공관 개설이 국고 낭비를 초래했는지 정부의 평가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 아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정부는 ODA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대외정책과 개발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왔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개국 공관 신설 계획은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외교력을 강

화하기 위해 상호주의를 포함해 정량·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공관 신설 결정이 국고 낭비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국과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의안에서 언급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과의 민감한 교섭 내용 등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국과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의 대외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향후 국제행사 유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조사 추진은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기업과 함께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국민께서 기대하셨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BIE 회원국 대상 전방위 교섭을 통해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들의 신규 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 기반을 강화한 측면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유치 교섭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국과의 장기적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BIE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 논의가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미 내용은 다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반복하지 않겠고요.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떨어진 것에 대한 사과이지 지금 국정조사 하는 것은 왜 떨어졌냐, 왜 판단을 잘못했냐, 지금 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다음 유치에 방해가 된다거나 다른 국가와의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걸러 가면서……

왜냐하면 도대체, 예를 들자면 지금 12개 공관이 우리 외교사 전례에, 11월 말에 투표인데 11월 초에 12개 공관 신설을 약속한 게 언제부터 결정된 건지, 예산은 그 전해에 확보된 것이 타이밍상 11월 초인지 이것도 외교부가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외교부 계획이 보통은 그 전해에 하면 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올해 12개가 전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획서라도 내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약속까지 해 놓고, 저는 약속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약속했으면 12개 신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표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올해에 몇 개, 내년에 몇 개, 이런 것도 우리에게 전혀 알려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비밀주의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유치를 위해서 신설 약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효율도 생각해야 되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대통령이 사과했으니까 필요 없다, 다음 유치를 위해서 민감하니까 필요 없다, 다른 국가와의 관계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의 우려들을 감안하면서 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이것 유치가 안 되면서 국민들께서 실망을 많이 하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얘기가 길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외교부에 있을 때 반기문 장관님이 사무총장 되셨는데 올림픽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국제행사 유치, 국제기구 사무총장 나가고 하면 강경화 장관 사례도 있지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형편없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그리고 관계국들이 앞에서 해 준다고 그랬지만 또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2차 때 밀어주겠다는 나라도 있고 복잡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일을 할 때 정부 공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삼성, SK 포함해서 우리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했거든요. 그 기업들의 국제적인 이미지라든가 관여한 부분의 내용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아까 알아야 된다, 이것 좀 파악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제 곧 국정감사, 정기국회 시작하잖아요. 국정감사 때 필요한 자료 받고 불러서, 지난해 11월에 이미 박진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와서 상임위에서 상세히 답변을 하셨고 사실 그거와 관련해서 책임지고 나가셨다고 보는데 더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다, 이건 좀 단단히 챙겨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9월·10월에 국정감사 할 때, 정기국회 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한 번 유치 실패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우리 대기업들도 관련돼 있고 외교 교섭 내용도 있는데 이걸 다시, 어떻게 보면 이슈화한다고 그러나요? 이걸 하나의 쟁점으로 결의안을 내고 이렇게 언론에 크게 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거냐, 바람직한 거냐……

그래서 그 조사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도 앞으로 외통위에서 국정감사 할 때 중인으로 부르든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국정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크게 벌일 때 앞으로 중요 행사 유치라든가 전 세계인이 바라볼 때 과연 이것이 우리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한가,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건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작년에 부산엑스포 추진 과정에서 저도 외통위에 있다 보니 국정감사, 해외 국감할 때 의원들이 각 나라에 갈 때마다, 대사관에서도 열심히 뛰었지만 해당 국가에 의원외교 차원에서도 협조를 요청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태리 같은 경우는 그들이 1차에서 탈락하면 결선에서는 한국을 지지하겠다라는 약속을, 그쪽의 카운터파트가 마침 외교부차관을 맡고 있더라고, 의원내각제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야말로 중앙정부 또 부산시정부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국회까지 나서서 총력전을 벌인 총국책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결과가, 모든 사업이 100% 다 되는 건 아니지요. 잘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번에 결과가 너무 참혹스러워서 부산 시민들을 거의, 2002년 월드컵 때 전 시민들을 모아서 응원을 하듯이 부산에서 두 군데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9 대 29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때 저희가 국감할 때도 해외에서 보면 대체로 1차에서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2차에서 뒤집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마지막까지 각 대사관에서 보고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저는 국정조사 추진 결의안과 관련돼서는 우선 외교부가 갖고 있는 태도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책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모든 사업은 제대로 된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또 교훈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실패하고 나서 직후 대통령 사과 담화한 걸로 이걸 좀 통 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이것은 더군다나 작은 사업이 아니고 중요한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도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 사과 담화 이거 하나로 통 치고 넘어가려는 외교부의 자세는, 더 더욱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정말 국조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건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우리나라가 월드컵 또는 올림픽 또 엑스포까지 포함해서 여러 국제대회를 유치했었는데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처참하게 진 적은 제가 과거 기록을 다 봤는데 없었습니다. 119 대 29, 저도 그 숫자를 보고서 너무 놀랐는데 그걸 보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처참하게 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국제대회 유치 경쟁하면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을 통해서 각 나라의 동향을 파악하고 수시로 판세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유치전에 활용하고 나중에 결과까지도 예측하는 건데 이렇게 처참하게 지는 결과가 나온 거를 51 대 49, 그것도 표결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도 그런 예측을 내놔서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관심 갖고 원인이나 분석 그런 평가작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정부 기관에서 이거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주도했던 산자부도 그렇고 또 외교부도 그렇고 정부 기관에서는 이걸 분석작업, 평가작업을 안 하고 있답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거 같던데.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했는데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고 또 판세 분석도 터무니없이 엉터리로 해서 더 처참한 그런 상황을 초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분석하고 또는 다시 복기하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또 향후에 어떤 국제대회·국제행사를 유치할 때에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정부기관·중앙정부에서는. 최소한 그거는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얘기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국회가 촉구하는 건데,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건데 그거를 국회가 그 일마저 안 한다 그러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정부가 그걸 실패의 원인도 분석하고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판세 분석도 그런 작업을 다 해서 결과를 받아 보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면 국정조사할 필요 없지요.

그거는 그 이후에 가서 판단할 일인데 중앙정부가 그것조차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지요. 정부가 잘못한 거를 감시하고 잘하도록 독려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그 일마저 우리 국회가 못 한다 그러면 그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중앙정부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고 또 분석 자체가 그렇게 틀렸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작업을 하도록 국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성락 위원님.

○**위성락 위원** 저도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대규모의 외교 캠페인을 해보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 경우처럼 대형 외교 참사는 아주 드뭅니다. 전모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들리는 이야기, 보도된 이야기를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엄청난 외교 시스템의 폐일리어(failure)입니다. 보고체계, 운영체계, 지휘체계 상에서도 수많은 문제가 누적된 것이고 사실 또 이 오퍼레이션은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한 것들인데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생겨나서 이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또 좀 선진적인 나라라면 먼저 정부 내에서 이거를 파악하고 조사하려고 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되느냐, 교훈을 얻을 건 없느냐. 그래서 무슨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사실 대통령이 사과한 것으로 문제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폐일리어를 파악하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남는 건데 사실 우리가 통상 보는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격노를 해야 하고, 격노 많이 하시는데 격노를 해야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텐데 아예 그런 얘기가 없고 덮는 데만 급급합니다. 한국 외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당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파를 넘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부터 나서서 해야 하는데 아니하려고 하니 국회가 하는 수 없이 파악하자, 교훈 얻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만 논의를 해야 하지 이 일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개선책을 내놔야 됩니다. 외교부도 이 일을 자꾸 회피하고 덮는 데만 급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밝혀서 외교를 더 낫게 하고 발전시키자는 대국에 초점을 둬야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피하고 지나갈까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큰 시스템 폐일리어가 있었고 이것은 덮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련 사항을 다 파악하고 교훈을 얻어서 고쳐야 합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외교부 차원에만 문제가 국한되지 않아요. 외교부, 대통령실, 유관부서, 민간까지 광범위한 진상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민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저는 국정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미국이 이라크에 살상무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전쟁까지 한 사실은 나중에 백서를 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안보체계고 군사적인 문제인데 나라의 국익과 향후를 위해서 이런 아픔을 결국 시인했지 않습니까? 전쟁 잘못 판단해서 전쟁했다 그것까지 하는 그게 진짜 선진국이지요.

지금 부산시가 11월에 백서를 냅니다. 외교부가 만약 백서를 내고 했더라면 저는 국정조사 발의 안 했을 겁니다.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에서 전부 다 따지면 되겠지요. 아시다시피 국감에서 지금 따질 외교 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도 절대 부족하고요. 빼어 내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교부의 태도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료를 안 준단 말이에요. 12개 공관 설치에 관한 그게 뭐 그렇게 비밀입니까? 그건 공개까지 했으면 언제 예산이 결정되었고 예산은 언제 되었고 계획이 언제 되었다는 걸 아무리 요구해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고요.

특히 보시면 아까 박진 의원이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하는데, 아니지요. 공천 받아서 선거 나가셨지요. 그다음에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은 공천받아서 나갔지요. 한덕수 총리님 재신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하셨던 분은 재신임받았지요. 오영주 당시 2차관은 중기부장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 산자부장관으로 승진했잖아요. 누가 책임 받았습니까? 이러면서도 뭘 이게 그냥 지나가야 될 일입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에서 지금 다시 재도전한다 안 그럽니까? 이거 안 밝히고 또 재도전할 겁니까?,

차관님.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김준형 위원** 외교부가 11월 초에 이메일 전문 보내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는 120개를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것이 외교전문에 ‘거짓말이다. 우리가 지금 거의 추격했고 2차에서 뒤집는다’는 전문을 전 공관에 보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준형 위원** 장관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예상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이것이 판단 잘못이라면 무능력한 거고요. 알고도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나 이것들이 민감하고 그게 해가 되는 부분은 내용을 우리가 더 좁히더라도 지금 외교부가 안 하고 있고 마냥 재도전한다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인요한 위원님.

○**인요한 위원** 다 지나간 일이지만 새만금 챔버리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전 정권도 거기에 책임 있고 지금 정권도 있고 지방도 책임 있고 중앙도 책임 있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 땐 별에, 여름에 제일 더울 때 거기에 챔버리를 열었다는 것은 참 상식 밖의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영어로 에니바디(anybody)가 생각하기에 섬바디(somebody)가 하겠지. 그런데 노바디(nobody) 같단 말이에요. 그거 막아야 되는데, 강원도로 보내든지 순천 정원박람회를 보내든지 그 사람들 좀 그늘에서 지낼 수 있게, 이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지난 33년 세브란스병원에 있으면서 15년 정도 아랍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해서 제일 많을 때는 100억씩 매출을 올렸는데, 아랍 국가만 해외 환자 유치해서,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우디지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올 때부터

상식적으로 어마어마한, 아랍 사람들의 성격을 아니까 어마어마한 재원을 풀 것이다 이게 사실 상식이었어요. 국민을 속이고 뭐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좀 지나친 낙관주의라 그럴까, 유치를 못 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국가적인 국정조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그런 얘기 를 우리 스스로 많이 떠들어서 일이 커져서 외부에 좀 창피스럽게 될까 봐 이것만 걱정 인데. 사실 이게 너무나 큰 실수예요, 그 건은 누구나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나 이걸 가지고……

그리고 외교부에서 정말 그 원인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슬슬 양탄자 밑에 집어넣는 거 저도 반대입니다. 그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ODA에 관한 겁니다. 제가 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총재도 했고 KOICA 자문을 20년 이상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원조를 주고 이런 것은 일본이 굉장히 잘하고요. 또 중국은 말할 것 없습니다. 어디 아프리카 같은 데 공사하면 팔구십 %를 다시 회수해 와요, 자기네 인력이 나가서. 굉장히 야비하게 하는데 대한민국 ODA는 비교적 굉장히 순진합니다. 대한민국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챙기는 게 없어요. 상당히 순수해요.

그래서 ODA 얘기가 혹시 나올까 봐, ODA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원조를 주면서 이득을 챙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비교적 대한민국은 그 점에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ODA를 해 온 걸 저희가 직접 경험도 했고 또 KOICA 자문하면서 봤는데 그런 거는 일일이, 뭐랄까요 그런 것도 구체적인 그런 걸 이용하지 않았느냐, 혹시 방향이 그쪽으로 갈까 봐 걱정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충분하게 1, 2, 3…… 그러나 제가 사우디 얘기가 나올 때 ‘아이고, 저 사람들 그 가난한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돈 쓰겠구먼’ 그리고 딱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사실 원인은 다 나왔어요. 사우디가 가진 굉장한 재원 가지고 아주…… 남의 나라 칭찬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성락 위원님.

○위성락 위원 아까 김준형 위원님이 전보를 내보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잖아요, 이런 걸 내보냈느냐. 차관님, 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시는데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닙니다.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요, 그 답변으로 대응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의 모든 논의에 그 답변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정보위를 하는데 정보사에서 민감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큰 난리가 났는데 그걸 제가 물었더니, 방첩사에 물은 거예요. 방첩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첩의 실패거든요, 카운터인텔리전스(counterintelligence)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수사 중인 사안은 말할 수 없다 그걸로 그냥 다 막는 거야, 다.

이게 지금 기자회견장이 아니거든요. 무슨 취재기자가 묻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국정을 논하기 위하여 묻는 건데 전문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전문 내용은 답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논의 자체가 부인됩니다. 전문 내용에 대해서 직접 인용을 할 수 없

다면 어떤 취지로든 설명해야 하고 답을 해야 하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꼬리 잡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강 차관님을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연도 많이 있는 사이인데 그런 사적인 걸 생각하면 미안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취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했느냐 또 그 판단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판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내려와서 그런 걸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어디서 고칠 점이 있다는 거지요. 중대한 판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지 마시고 논의를 좀 진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강 차관님.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사실 국민의 기대가 위낙 커던 큰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서 뛰어서 말씀 주신 대로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런데 부산 엑스포의 경우는 정말 전 국민적으로 민관이 한마음이 돼서 뛰었기 때문에 더욱더 실망이 크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사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엑스포특위 보고를 위해서 분석 자료를, 보고 자료를 국회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저희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고서를 냈던 것들, 경쟁국은 어떤 방식으로 승리했는지 등등의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웅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기업인 부분인데요. 기업인들은 사실 거의 한마음이 돼서 정부와 함께 거의 세계를 누비면서 유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노력이 알려지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또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저보다 더 외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항상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 상대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이 있고 우리가 그다음에 또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떨 것이고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저희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강 차관님 답을 들으니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벼운 사업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었고 대통령께서 작년에 아마 순방외교의 절반 이상은 부산엑스포에 집중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중했고 또 대통령실에 추진 책임기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장성민 실장이 책임자로 해서 뛰었기도 했고.

하여간 총리를 포함한 공식 기구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순방 예산을 정규 예산의 배 이상으로 예비비를 당겨서 뛰고 미국 갔다가, 미국 유엔총회

기간에 가셔서 그 힘든 정상외교를 수없이 몇 분 단위로 하다가 지친 양반이 또 마지막에 파리까지 날아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정말 총력을 기울였는데 결과가 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추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도 하고 반성도 하고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인데 지금 보면 그냥 통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보고 내용이 그러하거든요.

그리고 12개 공관도 상호주의든 아니면 우리가 국력과 국격이 신장된 만큼 저는 외교 공관을 더 증설하고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왜 그 관련된 자료도 그렇게 감추고 보고를 안 하는지, 그게 무슨 감출 일인가요?

우리 한국에는 대사관이 있는데 한국 측에서는 해당 국가에 대사관이 없는 나라, 대부분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들이잖아요. 상호주의로 8개 공관을 신설하는 거라든지 또 4개의 분관이든 뭐 격상시키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교 쪽에 대한 예산과 지원이 지금 부족해서 늘리자라는 게 제가 국회를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지난 5년 전부터 여야 할 것 없이 공동의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걸 감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참……

○**김기웅 위원** 제가 부가적으로 좀……

○**소위원장 김건** 김기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차관님, 혹시 조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결의안 관련해서 경제인들의 의견 들어 보셨습니까, 관련된 사람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기웅 위원**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당사자들이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직접 물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김기웅 위원** 제가 아는 한은 하나 건너 들었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시라고 하는 거는 들었어요. 저는 건너 들었어요.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면 이게 지난 정부 때 사우디보다 먼저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강도를 아주 강하게 하지는 않았지요, 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사우디가 뒤늦게 들어왔지만 제가 알기로 각 각료들이 특별기를 타고 모두 각 지역을 맡은 데를 돌면서 속된 말로 열심히 돈 뿐이라고 다녔고 저희는 뒤늦게 이제 한번 해 보겠다고 우리 KAL기 시간 맞춰서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데 위원님들 뜻도 이걸 가지고 뭘 쟁점화하거나 이슈화하겠다보다는 이번 일을 잘 분석해서 좋은 교훈을 찾고 다음에는 국가적으로 성공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셨고 아까 김준형 위원님도 외교부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뭔가를 좀 잘 정리해 준다면 국감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슈화되는 것만으로 앞으로 우리가 다른 행사 유치를 할 때 기업인들 참여를 유도하거나 각 지역에서 좀 도와달라고 민간에 협조 요청을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선뜻 ‘할게요’, ‘좋습니다’ 혹은 다른 나라와 교섭을 뭐 한다 할 때 그 나라들이 쉽게 우리한테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 뜻은, 취지는 지금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왜 이걸 요구하시는지 취지는 이해하셨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크게 벌렸을 때 향후에 가져올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민감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의견은 외교부에서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신 대로 국감 전이라도, 어쨌든 11월에 부산에서 백서를 내지만 외교부나 산업부랑 같이 해서……

사실 외교부가 일부밖에 안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업부하고 협조를 하든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기 나오신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설명할 수 있게, 그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보고가 됐든 백서가 됐든 어쨌든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걸로 해서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사니 뭐니 해서 오라 가라 이런 얘기들이 크게 나가서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저의 안은 외교부에서 그런 거를 약속한다든가 차관님이 앞으로 준비해서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보고서 내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든지 해서 방안을 찾아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소위원장 김건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차관님, 아까 상대국이 있다고 얘기한 거 똑같은 말을 이종섭 보냈을 때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쓰고 지금은 이렇게 씁니까? 제가 상대국하고 관계를, 공관 협상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정식 경로를 통해서 12개 공관 설치가 필요했다면 계획이 있을 것이고 회의가 있을 것이고 예산이 있을 것이고 집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도 안 줬잖아요. 아니, 그걸 제가 이해를 할 수…… 그게 왜 상대국하고 문제가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12개 중에 올해 3개밖에 안 되고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위원님, 12개 공관 예산 관련해서는 작년 21대 국회 회기 중에 외교부에 포함을 시켜서 외통위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춘 것이 없습니다.

○김준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미반영됐다면 지금은 어디에서 얼마가 어떻게 집행되는 거 저한테 지금 제출 안 하고 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사실 그것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하면 되잖아요. 뭐가 비밀이라는 거야.

○김준형 위원 하면 되잖아요. 그게 왜 지금 상대국하고 문제입니까? 저는 사기업 뒤에 숨고 상대국 뒤에 숨는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비겁합니다. 그게 왜 외교적인 문제가 되고…… 제가 언제 기업 비밀, 기업이 어디 가서 누가 했던 로비자금 자료 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압니다. 왜 제가 이 공관 문제 얘기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부도 되어 있고 총리실도 다 있으니까, 그러나 외교부에서 11월 초에 12개 공관 설치하는 건 누가 봐도 11월 말에 투표한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들어갈 예산이 효과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달라고 해도 한 번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차관님 얘기를 들으면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소위원장 김건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 결의안은 계속 논의를 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바로 결론 내기가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요, 계속 논의로 돌리고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알려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건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외교부의 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뼈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는 평가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엑스포특위 자료 송부도 작년 11월, 이미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번 22대 국회는 5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노력을 그사이에도 기울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자세한 비밀 사항을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십니다.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니까 외교부에서 공관 개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게 앞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지금 일단 이 상황에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모이는 시간은 오후 2시에, 통일부 소관 사항은 2시로 했으면 합니다.

일단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통일부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개속계의)

○소위원장 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56)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10)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85)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6)

10.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7)

1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6)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7)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9)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9)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2)

2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8)

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3)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8)

23.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정혜경 의원·김준형 의원·김영호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0699)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3항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수경 통일부 차관님 출석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의사일정 제6항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교육받거나 해당 학교의 입학·편입학 및 졸업을 위한 준비학습·보충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제3국 출생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명시적으로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를 개정안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의 자녀로 한정하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북한출생 그리고 제3국 출생, 남한출생 자녀 모두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4페이지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에서는 제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4항을 신설하기보다 1항과 3항의 해당 자구를 고치는 게 법문의 간결성 등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 1항에서 출생지를 추가함으로써 교육지원의 고려 요소를 명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개정안과 같이 초중등 교육지원 대상을 탈북민 자녀로 확대하는데 동의합니다. 탈북민은 체제와 문화의 차이 또 국내 가족의 부재로 인해서 자녀 교육과 양육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탈북민 가족공동체의 우리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탈북민 2세를 위한 체계적인 양육 및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 자녀에서 탈북민 자녀로 수정을 하고 구체적인 교육지원 기준과 대상 학교의 범위 등을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4조를 신설하는 것 이외에 1항에 대상 자체를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하는 것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다른 의견이 있는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중국을 ‘중국 및 제3국’ 이렇게 따로 적시를 해야 됩니까? 정의를 할 때 중국을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 북에서 낳았거나 제3국에서 낳았거나 우리나라에서 낳았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군이 ‘중국 및 제3국’이라고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법률에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왠지 중국이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사우** 전문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대비표상에는 중국이라는 국가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출생지라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하위명령 등에서 포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전문위원 김사우** 4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1페이지부터 ‘중국 및 제3국’이라고 이렇게……

○**소위원장 김건** 검토보고 요지에 그렇게 되어 있고 법안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김기웅 위원** 내가 이걸 특별히 명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소위원장 김건** 법 내용에는 중국이라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어.

○**김기웅 위원**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다른 이유는 없으셨다 이거지요, 그냥?

○**소위원장 김건** 예.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저는 박충권 의원께서 발의한 취지는 전적으로 합당한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중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봅니다만 역시 북에서 태어났거나 또 중국에서 일부 체류했거나 또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격차들이 꽤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수정안이 합리적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적극적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한 만큼 수정안을 처리하는 게, 통과시키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대충 수정안대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남아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의사일정 제7항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외 별칭이 남북하나재단입니다. 재단의 사업에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장례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조문대비표에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가족, 친인척이 없고 무연고자로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재단이 사업의 일환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동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책임이 국가에 부여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먼저 규정한 뒤 그 업무를 북한이탈주민재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단락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관계 기관으로부터 신속하게 북한이탈주민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인 무연고 사망자와 친분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북한이탈주민재단과의 장례의식 주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조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다수가 가족, 친인척이 없고 무연고자로 국내에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지자체의 조치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장례지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남북하나재단이 무연고 탈북민 사망 시에 장례 및 납골안치, 봉안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아무래도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확인 강화 및 재원 확보를 통해서 체계적인 장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연고 시신의 처리 및 지원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체계 상 정부, 즉 통일부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에 이를 남북하나재단의

사업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하면 법 개정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사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조항을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조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의 수정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그 법안을 발의해 주시면 병합심사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여기 소위에서 논의해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수정하자고 이렇게 의결하는 것은 안 되고 새로 법안을 발의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사우**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수정은 법안이 넘어온 그 범위에서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넘어가는 것까지는 수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조항을 두어 개 새로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수정 범위를 좀 벗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위원회안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 법안발의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해 가지고 법안을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병합해 가지고 심사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전문위원 이야기가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박충권 의원이, 우리 상임위가 아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또 여당 의원이니까 여당 측에서 방금 제기한 것들을 좀 보완해서 발의를 하면 두 개를 병합심의 해서 다음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조금 전에 교육지원 포함해서 법안이 약간 과도하달까 과잉보호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이 법안은 이미 잘 되고 있고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안을 또 만든다는 게 저는 다소 과하다는 느낌이 약간 있고, 최근에 통일부 전체적으로 통일부 사업이 탈북자 사업처럼 인식되고 남북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시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좀 과하다.

그리고 이탈주민들과 동의 여부가 확보됐는지, 그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법의 대상이 되는 그 풀의 이분들과 합의가 된 사항인지 묻고 싶거든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됐다든지 합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좀 과보호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통일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물론 형평성 문제나 혹은 일반 국민들이 역차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체제로 와서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특허나 무연고자분들이 많으실뿐더러 가족 없이 혼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도 굉장히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

하다는 지적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돌아가실 때만이라도 저희가 좀 더 최대한 예우를 다해서 장례를 치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차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준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무연고자는 자체에서 시행하고 이탈주민이 확인될 때는 하나재단에서 하잖아요. 제도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 법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확인이 돼야…… 왜냐하면 법을 그냥 만들어 내는 게 꼭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맞습니다만, 몇 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이 있었을 때 빈소도 잘 차려지지 못해서 광화문 한가운데에 빈소가 차려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지금도 무연고자들에 대한 자체의 어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빈소라도 제대로 마련해서 알고 지냈던 탈북민분들이 와서 조문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인요한 위원님.

○**인요한 위원** 지난 25년 동안 남북관계에 참여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 딱 명시한 것에 대해서 코멘트가 아니고 탈북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선족, 조선족이라는 말도 참…… 조선동포, 조선교포 그러니까 중국교포 이런 분들이 친척이 다 북한에 있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는 물론이고 이런 분들한테 어떤 때는 좀 과잉인데 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척들이 다 아직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국은 평양이 아니고 서울이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나라고 또 심지어 탈북한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요. 이 사람들을 정말 어떤 때는 과잉 소리 들어도 잘 챙겨야지 이분들이…… 또 탈북한 사람들도 연락을 다 합니다, 북쪽하고 자기 가족하고. 그래서 남한에 왔더니 우리를 안아 주더라, 우리를 배려하더라, 우리를 잘해 주더라 이런 소문이 자꾸 나는 것이 전략적으로 통일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꼭 톱다운, 한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북쪽을 방문했는데 그 것도 중요하지만 바텀업, 밑에서부터 굉장히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대한민국 이거에 제가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북을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편견을 가진 건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존경하는 인요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저도 지난 20년간 탈북자랑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을 조금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두 개의 법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탈북자 관련된 민생법안 같아요.

그래서 왜 많고 많은 이슈들 중에서 무연고 이 문제랑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얘기를 했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 사람, 이분들이 여기 한국에서 정착했을 때 하나는 다른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소셜네트워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적 안전망이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주위의 커뮤니티 안에서 제공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고립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연고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맞고 여기에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스탠더드를 높여 가지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더 맞추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렵고 무연고인 사람들을 더 낫아진, 한국의 낮은 보장에 맞춘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 때 보장을 하고 또 형평성이슈가 제기되면 다른 무연고 상황들,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의 무연고 상황들을 여기에 맞춰서 올리는 게 오히려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3국 출생 탈북학생도 또한, 사실 이게 비자발적 아이들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게 탈북과정 중 인신매매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상 거기서 낳게 된 아이들이 한국으로 오게 됐을 때 북에서 낳은 아이들과는 굉장히 다른 처우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입국도 안 되는 경우들도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적어도 많은 내용들보다는 탈북,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떤 민생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그중의 한 예로 북한이탈주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스탠더드를 높여야 되는 것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기가 돼서 저는 비록 외통위 소관이 아닐 수는 있지만 난민 관련된 혹은 이 주제와 관련된 여러 처우들이 탈북자들의 처우에 맞춰 가지고 같이 올라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내에서, 해외에서 사례를 보면 탈북,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탈북자들이 똑같은 난민으로 인정되는 카테고리 안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해외 사례에 비해서. 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질의 정책들을 하는가는 두 번째 문제지만 양적인 지원은 많은 상태인데 반대로 한국에 정착하는 다른 난민들이나 이주자들 같은 경우에 지원정책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극단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소관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민생이라든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기준을 높여 놓고 다른 소외그룹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스탠더드를 올리는 작업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질문인데요. 현재 일반적으로 무연고자는 지자체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무연고자는 전문위원 의견에 따르면 국가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것을 여기 재단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자 그런 취지인 거지요?

○전문위원 김사우 예.

○**홍기원 위원** 그러면 어떤 점에서 예우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무연고자 장례 절차와 이렇게 국가가 책임지고 재단이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 간에 어떤 점이 다른지 하나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검토보고 요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했을 때 재단의 장례의식 주관에 대해서 무연고 사망자와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조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해 가지고 세부적인 그런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지자체 주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그 주민을—관할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관할하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 일차적인 관리책임이 국가에 있다 보니까 국가가 그 관리책임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이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자체 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예산 당국으로부터 예산을 받을 때 좀 더 어렵게 받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결국은 자기가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이 내가 장례의식을 주관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면 남북하나재단이 주관하는 장례의식하고 약간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고 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법률로 그걸 조정하는 절차라든지 정해 놓게 되면 그런 분쟁이라든지 갈등의 우려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보고를 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홍기원 위원님 끝나셨나요?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정리를 하면 재단에만 이렇게 임무를 하나 넣었을 경우에 이게 정확하지 않은 규정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에 통일부는 연고가 없는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가 해서 위임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 내용 속에 재단이 그 일을 하도록 해 주면 된다는 게 지금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회안을 만들기에는 좀 복잡하고 조항 자체가 따로 막 가고 이러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면 직접 이것 발의하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박충권 의원님한테,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을 다투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이니까 시간을 좀 갖고 법제실 검토도 받아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소위원장 김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이용선 위원님하고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의를 해서 다음에 심사를 하면서 발의한 다른 법안과 함께, 김준형 위원님 말씀하신 과잉보호, 형평성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해당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인 보호대상자와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보호대상자가 주거 이전을 요청할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이 주거 이전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주거 이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써 국내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절대다수가 여성이고 상당수가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에 비해 거주지 이전의 제약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해 주거 이전의 지원을 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인 보호대상자의 경우 현행 규정인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행 규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보호대상자가 주거 이전을 요청할 경우를 주거 이전 지원 요건으로 하는 경우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관련 부처로부터 제기되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또 탈북민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반드시 여성만 피해자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렇게 법이 될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인식을 혹시 심어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저희는 조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행 법 규정으로도 생명·신체 등의 피해 우려 시 주거 이전 지원이 가능하고 과거 스토킹 피해뿐만 아니라 침수 피해 탈북민 등등에 대해서도 주거 이전을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제가 대표발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논의 과정에서 통일부에서 좀 더 현실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내놓겠다 해 가지고 보류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새롭게 제도를 정비한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문위원이나 통일부 의견에 크게 반대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많은 탈북민이 여성이고 또 그분들이 한 군데 모여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대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허락하신다면 인권실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속기 때문에 마이크가 있는 좌석으로 나와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입니다.

지금 홍기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직접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당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22년도부터 관련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운영상 바로바로 주거 이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만약에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하나재단, 센터 그쪽에 얘기하는 거지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저희 통일부에 직접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재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센터를 통해서도 지금 들어오는 것은 모두 다 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면 이 조치는 누가 취하는 거예요? 통일부에서 해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이것 통일부에서 조치합니다. 통일부에서 LH공사나 SH공사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물론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마는 조금 더 시급한 사안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센터 같은 데로 옮겨 놓은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비슷한 유사 사례로 한 6건 정도를 보고 있는데 여성과 관련된 건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2년여 동안에 보더라도 한두 건밖에 있지 않고 저희가 이것 굉장히 민감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하는 그런 운영의 측면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 부서에서 대응 매뉴얼이나 지침 이런 게 명확하게 있어요, 이러한 사례의 경우도 주거 이전 지원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업무 절차로서 어쨌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량을 다 몰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매뉴얼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저는 전문위원이나 또는 통일부에서 제기한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잠재적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런 보호만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체제만 마련돼 있다면 법안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그런 게 돼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 좀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침 형식으로라도 만들어서 이런 경우도 이 법률 이 해당 조항에 따른 주거 이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확인하고 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인요한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차지호 위원님 순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인요한 위원** 아까하고 같은 말씀인데 일단 이탈주민 중의 상당한 수가, 3분의 2가 여성이지요. 그분들이 북쪽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10년 전부터 중국에서 지낸 시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물어봐요, 트라우마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속성으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그런 일이, 또 트라우마를 받은 일이 있으면 이런 법령은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이용선 위원 방금 인도실장 이야기대로 꼭 성범죄 피해 여성만이 아니라, 또 탈북자들이 대부분 임대 아파트들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아마 이전 사례들이 최근 6건 그렇다는 데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사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공공임대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LH나 SH의 협조를 구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항상 비어 있는, 최소한 몇 채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들의 피난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법이 있음으로 해서 아까 통일부를 포함해서 법무부나 다른 부처에서는 지나치게 걱정을 하던데 범위가 불명료하고 포괄적이고 또 이것 때문에 성범죄를 촉발할 우려 그런 판단과 우려는 지나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3만 5000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내에 들어올 때 기대와 또 한국에 체류하면서 느끼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생각은 천양지차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생활이 어렵고 우리 사회 최하층이잖아요. 그걸 벗어난다는 게, 박충권 의원님 같은 특수한 계층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 법으로 해서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글쎄 불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법이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한 말씀만 드리면 먼저 SH나 LH공사 쪽에서도 이 사안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6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한 4건 정도는 침수 피해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었고 실제로 이렇게 우려하시는 성범죄 관련된 부분은 한두 건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런 문제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성범죄를 촉발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 좀…… 아까 인요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중국 내 활동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게 인식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조금 공감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반드시 입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작년도에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데 노출된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한 22%, 탈북민 여성의 경우에 그렇게 돼 있고 또 국내 일반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한 38%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인식과 또 법률의 그런 저기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저도 존경하는 인요한 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탈북자들의 트라우마 관련해서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보다 탈북자들 사이에, 탈북자들뿐만이 아니고 집단적 트라우마를 가진 그룹들 사이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 조사들마다 비율이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이전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가졌던 그룹 안에서는 그 그룹 내에서 폭력의 양상들이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폭력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룹이라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탈북자분들은 특히 초기 정착 과정에는 보호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다르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홍기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듯이 주거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조금 많이 봉쇄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안에 있고 주거 이전이 힘든 상태에서 폭력의 비율이 높아졌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형태의 법안, 저는 사실 성폭력 피해나 아니면 주거 이전에 국한된 것보다 조금 더 넓은 보호막이 법령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법령에 대한 니즈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또 염려되는 건 현실적으로 탈북자분들이 젠더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집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청들이 적었던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집을 옮길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시겠지만 임대아파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원 안에서 추첨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평양 같은 서울로 온 그룹들이라는 이게 굉장히 커서 만약에 이런 문제로 집을 옮겨 준다는 것들이 사실 공공연하게 탈북자 커뮤니티 안에서 퍼지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집을 옮기는 것들이 굉장히 또 니즈가 큰 상황에서 이런 피해와 주거 이전이 아예 결부돼 버린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방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작용들이 있고 중점적인 것은 이게 폭력, 가정 폭력·성폭력의 내부폭력, 집단 안의 폭력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그룹이기 때문에 이 법령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법령화돼서 지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그룹들이 다시 이런 데 노출됐을 때 그 트라우마는 훨씬 더 깊어 영향을 크게 주고 결국 통일부에서 지향하는 탈북자들이 잘 정착하는 문제에 큰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한번 고려를 심각하게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건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제가 이 법안 통과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 법안 제안 내용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주거 이전 지원 대상에 성폭력에 관한 항목이 두 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소위 낙인효과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이러한 피해에 노출된 사람들이 주거 이전 지원 혜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꼭 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좋겠는데, 실장님 아까 답변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게 이미 지난번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할 때 통일부에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고민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또 실제로 여기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 대다수가 여성이고 또 제3국에 있을 때 그런 여러 일들을 겪은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잠재적인 피해자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통일부 부 차원에서도 그런 지침도 명확하게 만들고,

제 생각으로는 교육 단계나 또는 각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 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이것을 명확하게 지침을 줘서 탈북민들을 관리할 때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활용할 수 있고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방안을 준비하셔 가지고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서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김사우** 이용선 위원님하고 차지호 위원님하고 홍기원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위원이 보기에도 20조 근거가 6항입니다. 6항인데,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정책대상자인 탈북민이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뒤집어서 탈북민이 자기가 필요를 느낄 때 주거 이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통일부차관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특히 탈북민분들이 상당수 여성인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좀 더 확실하고 철저한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런 피해방지책 혹은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들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탈북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체제가 위낙 다른 곳에서 오다 보니까 성폭력에 대한 인식 자체도 다를 수가 있어서 비록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분의 비율이 적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탈북민분들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실에서는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 조문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게 통일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일부장관이 예를 들면 대상자들한테 이런 것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식의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대상자들이 이것을 인지할 수 있고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것은 한번 홍기원 위원님 검토하시고 통일부에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 조항을 봤을 때는 어떤 이득을 탈북자한테 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부가 어떤 위험 상황에 처한 탈북자를 다른 데로 옮기는 권한, 옮기

는 조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탈북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옮겨야 될 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조항을 잘 검토해서 통일부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검토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8항은 논의된 대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기재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관련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조문대비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실시 초·중등학교에 대한 경비 지원 의무화 부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적응·정착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운영경비는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차적으로 통일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관련 협의체 설치 부분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은 통일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인 협의체를 설립·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협조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정안의 협의체 참여 대상기관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열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통일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사립학교에 대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다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보조 관련 법률이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 형식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 차원에서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협의체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 교육부 등이 참여하고 있고 교육부나 실무협의회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별도의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에 대해서 다소 저희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다만 정착지원협의회 심의사항에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지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제가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을 많은 대안학교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안학교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 안 하고 있고,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북하나재단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공모를 통해서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홍기원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한다 하면 공모에서 당선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는 거고 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전에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통과가 안 돼서 이번에 또 발의하게 된 건데 그때 통일부에서 관계기관 협의회 이런 데서 충분히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교육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는지 또 거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합의나 결정이 이루어진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비인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많은 학교들이 비인가된 대안교육기관인데 이것을 물론 마음 같아서는 탈북민 학생들에게 다 지원을 해 주고 싶지만 인가받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했을 때는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공모를 통해서 돈을 주는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질과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지지난해 22년도부터 원래는 통일부만 단일 창구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하고 교육부 내지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제일 큰 데가 한겨레중고등학교입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가 통일부 통해서 나가는 것이 한 20억 원 정도 되고 교육청 통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한 4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유명한 학교 중에 한 군데인 여명학교에서는 통일부가 한 8억 정도를 주고 인건비 중심으로 해서 한 12억 정도, 그래서 총 다섯 군데 인가 대

안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세 군데 정도는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 같은 데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그 범위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교육부는 어느 쪽 한 군데만 하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일단 말씀하신 내용 좀 정리해서 우리 의원실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탈북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대안학교로 간다는 이유는 일반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또 아까 존경하는 인요한 위원님이나 여러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 여러 면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예를 들면 탈북민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와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같은 수준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지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자료들 제출해 주시면 제가 상황을 판단할 텐데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제가 필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른 위원님들.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것들은 지금 법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만 이해를 하고.

비인가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부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탈북자들이 정착을 했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한 그룹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아이들이 몇만 명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마다 겪어 왔던 특성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특성들을 가진 아이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인가된 그냥 일반 공립학교들이 맞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비인가라 하더라도 대안학교들이 맞는 아이들이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한…… 그러면 공립학교 안에서 혹은 인가된 학교 안에서만 지내는 아이들만 저희가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탈북자 아이들의 경험의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이 법이 읽혔고요.

그런데 여기에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학교에 지원하는 것들도 한 가지 방법이고 아니면 학생들이 특정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학생들이 특정 교육을 선택했을 때 학생들한테 그것을 지원할 수 있으면 사실 이 관련된 법안들을 피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는 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홍기원 의원님께서 이 법을 제안하신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초중학교까지, 얘기하지 않은 고등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그 이전의 경험들을 넘어서 잘 정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일종의 국가의, 북한이탈주민의 주무기관인 통일부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성들을 확보할 수 있게 이 법이 만들어 질 수 있으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일부가 책임을 가지고 이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 아이들에 맞는 다양한 교육들이 보장될 수 있게 조처를 해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진로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어요. 특히 탈북자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부모가 좀 역할이 제한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년, 20년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개입할 수 있는 게 초중고 교육인 것인데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지원 정책들보다 저는 훨씬 더 지원들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 홍기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신 이 법률안이 통일부의 책임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건 인요한 위원님.

○인요한 위원 이 법도 제가 역시 굉장히 적극 지지합니다, 교육부가 일차적으로 챙기는 사람이 있겠지만 교육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또 대안학교 같은 곳에 통일부가 돋는 것.

그런데 큰 틀에서 탈북자에 관한 백서도 제가 좀…… 아니, 탈북자가 아니고 다문화가 정에 대한 것 썼는데 오늘 듣기 매우 거북하지만 사실 탈북자들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 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정부의 경찰 보고를 보면 5%의 국민에게 경찰 시간의 50% 이상을 보내요. 50% 이상, 경찰이 신경 쓰는 그 범죄자들이 인구의 5% 미만이에요. 그 정도 많이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교육에 있어서 이 탈되지 않고 교육 잘 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돋는 것이 결국 여기서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끝에 가서는 돈이 오히려 절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법령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혹시 23년인가요? 두리하나선교원에서 운영하던 두리하나학교—한국판 쉰들러 목사라고 했던 천기원 목사에 의해서—그것은 비인가 대안학교였지요? 그리고 하나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아마 한 해인가 두 해 정도 조금 지원하고 그런데 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인데 결국은 거기 숙식하는 대안학교에서 주로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데 성추행이 심각해서 지금 재판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루밍 범죄같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접촉하고 하는 것을 범죄행위라고 전혀 인식을 못 하다가 나중에 아주 극악한 그런 것을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보니까 하나재단에서 지원하는, 아마 공모사업 지원인 것 같은데 그런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게 지원이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또 감독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가된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반면에 비인가 대안학교는 그런 게 지금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는 게 대체로 보면 책임 있게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지원 액수도 아주 작거니와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촉구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법하고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통일부차관 김수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가 대안학교가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을 넓히게 되면 그만큼 규율이 어렵고 규율을 강하게 하자면 지원 대상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고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하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학교들도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실제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교육부의 인가는 받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 대안학교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런 관리감독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강제하는 게 또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감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아까 전의 이용선 위원님 말씀을 조금 더 이어 가면 저도 경험을, 한번 평가를 좀 해 봤었어요. 그런데 탈북자 관련된,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질적으로 굉장히 서로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또 잘하시는 데는 정말 잘하시고 이 격차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데 아이들의 문제들은 사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격차 속에 넣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위험한 요소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저는 홍기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듯이 인가든 비인가든 정말 좋은 대안학교 여기에는 지원들을 굉장히 보장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것은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난민들 지원할 때 쓰는 방식인데 지원의 주체를 기관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나 혜택받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을 가든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교를 갈 때 선택권들이 아이들이나 아니면 북한이탈주민 학부모들한테 있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지원했을 때 학비들이나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그 학생을 따라가서 갈 수 있게 되면, 사실 주어진 데 이렇게 억지로 가고 이 사람들을 기관에서 보호한다는 시점을 떠나서 사람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가장 맞는, 그 아이들한테 가장 맞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무게 중심들이 통일부에서 그런 기관들에 지원을 하면, 탈북자들과 기관 사이에는 기관들의 힘이 더 세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이 어떤 대안학교, 그게 꼭 탈북자 대안학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들이 있잖아요. 좋은 대안학교들도 있고 그런 데 들어가고자 할 때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논의가 또 만들어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차관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개정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거고 또 하나는 협의체 만드는 것인데 ‘지원하여야 한다’ 이 개정 조항에 대해서 기재부나 교육부나 어디서 반대하는 데가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교육부에서도 아직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보조를 해 줄 때 ‘보조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보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일반 사람과 여기 탈북자 자녀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요. 이 조항에 대해서 기재부나 또는 교육부나 반대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기재부에서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교육부에서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규정 내용을 보면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현재는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원 안 할 것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국가에서, 특히 탈북자 자녀니까 통일부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 하나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규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할 때 이 협의체 구성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개정안도 그렇고 이 이슈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국회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고는 실질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협의회는 차관님이 위원장이잖아요. 거기에서 기재부나 교육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무슨 협의 결과를 내놓고 결정하고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살피지 못했다면 앞으로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아니, 오늘 법안 심사하는데 통일부 입장을 내놓기 위해서 차관님이 오셨잖아요. 이 안건이 논의될 거고, 그때 21대 국회에서 통일부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보고 안 받으셨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 부분은 제가 살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래서 아까 이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대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해서 법안 보류시키고 또 누가 챙기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두 번째 안,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기준에 있는 협의체를 활용해서 거기의 논의할 이슈에 교육 지원을 넣겠다 그런 대안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그동안은 안 움직였습니까?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여기 논의 항목에 그것을 넣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률에 넣을지 대통령령에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에 아까 말씀…… 여기 주제가 되는 교육 지원 그리고 지금 제안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또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확실하게 넣는 안을 준비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홍기원 위원 그렇게 하고서 이게 중복되니까 그 조항 넣는 것은 신중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21대 국회에서 얘기한 것을 오늘 와서 또 얘기하고 또 보류되고 또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변화 없고,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홍기원 위원 그래서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법률을 고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대통령령을 고치는 게 좋아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협의체, 저희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정착지원협의회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이행계획 같은 것들에 교육 부분이 사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교육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교육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특별히 대안학교 라든가 이런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온 것은 맞고요.

그리고 의무화, 저도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법과 혜택에 관련돼서는 최대한 덧셈의 정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의무화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이 담보되지 않을 우려도 있고 또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탈북민분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뭘가를 운영할 때 좀 모자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의무화로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홍기원 위원 아니, 여기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지원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고치더라도 국가의 책무만 좀 강화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지원하여야 한다’니까 지원 부담이 생기는 건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꾸 안 된다는 쪽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현행 제도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 법안 발의를 하게 된 거잖아요. 현행 시스템, 현행 규정하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이 법안 발의를 왜 했겠습니까? 문제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법안 발의를 한 거고. 그러면 이 규정대로 통과시키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이 마련되어야지 그것은 없이 말로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강행규정으로 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국가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협의회 규정은 통일부에서 여기 지원협의회 심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을 하면 좋을지 제안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서 검토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일부에서 홍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성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사일정 9항은 계속 심사해……

○이용선 위원 그렇게 매듭,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건 예.

○이용선 위원 협의체와 관련돼서는 방금 홍기원 위원이 제안한 대로 지금 현재 있는

협의체 안에 그런 규정을 좀 더 상세하게 삽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탈북자들이 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교육 지원에 대해서 법이 아니라도 실제 어떻게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지 안을 좀 짜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법제화할 건지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이용선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렇습니까?

○소위원장 김건 예,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과 둘째, 6·25전쟁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른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 그리고 셋째, 위로금 또는 의료지원금의 신청 절차, 송달 기한, 권리 보호 및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의 요지는 조문대비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추가 부분입니다.

개정안에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신설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 법 2조에서 전시납북자와 전시납북자가족에 대한 개념을 이미 정의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제3호에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지 않는 한 6·25전쟁납북피해자를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전시납북자와 그 가족을 피해자로 규정하려는 경우에 제2조(정의) 조항에 제3호를 신설할 수는 있다고 보나 기존 전시납북자와 그 가족과 구별되는 실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설하려는 안 제7호의4의 관련 사항을 현행 제8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9조에서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

부터 최대 6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을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2010년 12월 13일부터 2016년 12월 12일까지 위원회가 활동하였고 법 제10조에서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7년 6월 12일 진상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습니다.

현재 활동기간 종료로 인해 그 실체가 없는 위원회에서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는 없으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4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 바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위로금 지급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새로 구성할 위원회를 여전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전후납북자법과 동일하게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둘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로금 지급기한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금 지급 부분입니다.

위로금 신설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6·25전쟁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되 그 가족은 납북자의 자녀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위로금의 지급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25전쟁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전시납북을 전후납북과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고 6·25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 유형 중 납치를 제외한 사망·행불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피해보전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위로금 지급대상 검토입니다.

한편 위로금 지급대상인 그 가족의 범위에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시납북자가족 중 선순위자라고 할 수 있는 납북자의 배우자가 제외되고 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입법례와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1페이지, 의료지원금 지급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6·25전쟁납북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전시납북자로 기록된 4777명 중 계속적인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이 일정하게 소요될 것이지만 전시납북자 중 현재 까지 생존한 사람과 그 가족의 수를 특정할 수 없고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지원금은 통상 실비를 지원하므로 소요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전후납북자법 제11조에서는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 개정안에서는 의료지원금의 지급요건과 납북과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가 납북과 무관하게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의 경우 그 가족 범위에 납북자의 배우자가 제외되고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절차 및 소멸시효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6·25전쟁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또는 의료지원금의 신청, 위원회의 결정 시 송달 기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통상적인 신청 절차, 권리의 보호에 대한 입법조치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검토 부분입니다.

현행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면서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고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소멸시효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정채권을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전시납북자 수가 10만 명에 가까운 현실에서 소멸시효를 1년으로 규정할 경우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김수경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6·25 전쟁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하고 6·25 전쟁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시납북자와 전후납북자에 대한 지원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다양한 전쟁피해 유형 중에서 북한으로 납북된 피해자만을 특정하여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사망·실종자 등 다른 유형의 전쟁피해자와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이 문제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요. 위원회가 이미 끝났는데 위원회의 기능으로 넣어 놓고 있고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는 않고 다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런 건데요.

이 문제에서 우선 저는 정리될 부분이,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전후납북자하고 비교가 되면서 전후납북자들은 지금 아프면 병원 가서 비용도 주고 위로금도 다 주는데 전시납북자들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전시납북자를 입장에서는 우리도 뭐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 문제 제기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과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못 해서 납치가 된다든가—KAL 비행기 이런 것처럼, 동진호처럼—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 줘야 되는 일은 분명히 다르고 범위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구별되는 건 있고요.

그런데 여기처럼 대상이 조금 애매하고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건 고려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너무 대상이 많다, 특정하기가 어렵다 혹은 얼마나 돈이 들겠냐 이렇게 확대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선 이걸 당연히 오늘 결론 낼 수가 없는데 통일부에서도 그렇고 여기 발의하신 분들도 그럴 텐데 적어도 우리가 공감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시에 납북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방향에서 앞으로, 그게 위로금이 될지 의료지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생존해 계신 분이 계시고 가족들 중에서 많이 아프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어떤 걸 해 드릴 수 있는지, 해 드리는 게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공청회나 사실은 이런…… 그냥 우리 위원들이 논의하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안 자체는 너무 완성도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의견도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거기까지 정부가, 나라가 책임을 지나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 발의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할 텐데 통일부 차원에서도 좋고 저희 차원도 좋고 제 생각에는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좀 더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일단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건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궁금한 것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위원회에서 전시납북자를 4776명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대체로 어떻습니까? 기혼자들인가요 아니면 미혼인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선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이용선 위원 그리고 지금 추정컨대 그때 아마 보통 1년 정도 기한을 갖고 위원회에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9만까지 추산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 법은 기본적으로 위로금을 주고 의료 지원을 하자는 건데 대상을 납북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 밑의 자녀까지, 이렇게 2대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혼자들이 꽤 많다고 하면 그러면 자녀가 대상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선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김기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한국전쟁이라는 특수 상황과 그 다음에 국권이 회복된 평시에 납치·납북된 경우하고는 조건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후납북자들과 같이 최저임금 36배 적용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검토가 많이 필요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역대 납북자 명부 작성된 결 토대로 했을 때 한 10만 명 정도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그때 사건 5505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심사를 한 결과 4777명을 납북자로 공식 결정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다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당연히 타당한 가정인데—이분들에 대한 최저시급액을 36배 곱하게 되면 한 분당 8000만 원 이상의 돈을 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납북피해자랑 동일한 기준으로 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일단은 진상 규명이 늦어진 것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그러니까 정액—위로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기준은 좀 어렵지만 대안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건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저는 여기 검토보고 요지에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게 설득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은 전쟁 관련해서 또 일을 해 봤는데 전 세계 분쟁지역을 연구하다 보면 전쟁 중과 전쟁 후가 콘텍스트가 굉장히 다릅니다. 전쟁 중은 사실 거의 예외 상태에 가까운 상태고 여기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가 공권력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더 초과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한 가지는 피해라고 했을 때 6·25 전쟁 피해가 6·25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 혹은 당시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던 사람들과 납북된 것들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피해가 클까라는 판단들을 분명히 해 봐야 됩니다.

전쟁 중에 사망한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책임성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납북에 대해서 책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모순적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문제는 이런 논의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거나 하고 나서 따져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이 두 가지, 공권력이 예외적으로 전쟁 중에 멈춰 있었던 것과 전쟁 후에 납북, 공권력이 작동했을 때는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6·25 전쟁 피해에서 가장 큰 피해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이나 고문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책임성들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북에 대한 책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건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사안들 있지요? 기혼과 미혼 상황이 어떤지는 조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께서 기혼·미혼 비롯한 실태 파악부터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그런 실태 파악을 기초로 해서 김기웅 위원님이 전시납북자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의견 수렴 등 제대로 한번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차지호 위원님께서 전쟁 사망자나 고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검토해서 다음 심사 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0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9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관된 내용들이므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해당 안건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보고드리겠습니다.

9건의 개정안 중 권영세 의원안, 이재강 의원안, 윤후덕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은 저희들이 8월 13일 상정했던 법안들이고 이용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 위성락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 그리고 한정애 의원, 신정훈 의원, 조국 의원의 안, 다섯 법안은 국회법 제58조 4항에 따라 법안소위에 직접 회부된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대체토론 요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대체토론 요지 부분은 토론 종결 후 현안질의 시 관련 내용으로 발언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한 내용들인데 먼저 김기웅 위원께서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사전 신고나 승인을 법률에 규정하게 되면 정부 당국의 관여가 공식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권칠승 위원께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시 드라마나 가요 영상이 포함된 USB를 같이 보내고 있어 저작권법 등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해 통일부는 문제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후덕 위원께서 항공안전법에 따를 경우 대북전단 2kg 이상이면 국토부 허가 사항이고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통일부가 자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한정애 위원께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른 신변보호 대상자 중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대표도 포함되고 있는바 실정법 위반 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의원안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중 전단 등 살포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다른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단속하거나 규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의 원칙에 반하고 특히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한 부분이 과도하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보다 완화하거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삭제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고려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시 규정 그리고 관련 벌칙 규정 모두를 삭제하는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금지행위 및 벌칙이 전단 등 살포 금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취지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를 비교 형량한 적정한 제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습니다.

이재강 의원 개정안에 대하여는 전단 등 살포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살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관할 경찰서장의 금지 통고가 사실상의 허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인 이 법에서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개별·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 24조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사전신고 등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방안 그리고 법률체계에 비추어 통상적인 경찰관 직무집행에 대한 법령에 근거하여 실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간의 협조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윤후덕 의원 개정안의 경우 전단 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 및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승인받도록 하며 위원회의 소명을 전단 등 살포의 착수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완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의 주민으로서 국회의 추천을 받은 자 10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공정적이지만 위원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가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에 미리 소명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로 인식될 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혜 의원안에 대해서는 전단 등 살포에 따른 벌칙을 행정질서별인 과태료로 완화함으로써 남북 갈등의 한 요소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려는 것이지만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등 살포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주요 내용 비교 부분입니다.

먼저 권영세 의원안 같은 경우에 금지행위 및 벌칙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지혜 의원안과 조국 의원안은 벌칙규정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고 다음으로 6건의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전단 등 살포 관련 사전신고·승인 절차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재강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 신정훈 의원안은 관할 경찰서장 내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용선 의원안은 관할 시장 등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성락 의원안과 윤후덕 의원안은 통일부장관 내지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전제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부터 조문대비표이기는 하지만 전문위원이 보기에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놓은 법안들 각각에 대해서 어떤 카테고리가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는 게 더 우선적일 것 같아서 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전단 관련해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9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9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단,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 삭제 관련돼서 권영세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단 등 살포 금지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 관련 사전신고제 관련된 이재강·윤후덕·이용선·위성락·한정애·신정훈 의원님의 발의안을 말씀드리면 기본 입장으로서는 사전신고제의 경우 금지 통고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위협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전단 살포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통일부 소관인 남북관계발전법에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고 경찰서장이 금지하는 등 경찰서장이 통제 및 관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짐시법 같은 경우에 경찰청 소관의 법률로 우리 사회의 질서,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단 규제 조항은 정부의 대북 전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통제·관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경찰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단 등 살포에 관한 사전승인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검열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하는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위원 중 10인 이상이 접경지역 주민으로 되어 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이 매우 낮아 사실상 허가·검열제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칙규정을 하향 조정하자라는 박지혜·조국 의원님의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전단 등 살포 그 자체가 직접적인 위험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나 별금형으로 조정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 여부는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려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금지조항과 처벌조항 모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금지조항은 그대로 두고 처벌조항만 개정하는 방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체토론 때 얘기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임채정 위원장 계실 때 통일부가 안을 내 가지고 임종석 의원이 간사로 계시고 이쪽에 진영 의원 있을 때 이 법을 제출해서 만들었어요. 만든 취지가 남북관계에서의 대표나 이런 부분이 법제화가 안 되어 있어서 외교사절 임명·특권에 관한 법률을 남북관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법을 처음에 준비해서 했던 건데 오늘에 와 보니 각종 내용들이 붙어서 전단, 확성기가 와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어떻게 규정할 거냐를 가지고 위에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단이나 확성기라는 문제를 저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년 됐지 않습니까. 전단 날리고 확성기 튼 지가 이미 남북 간에 50년,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경찰 직무집행법으로 못 하게 다 막았던 게 사실이고, 못 하게 했고.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적당하게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침 있게 움직여졌던, 대북 레버리지라 하면 레버리지고 실제로는 영향을 받는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법리적인 것으로 보면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들 받아 보면 이것을 하는 것을 사실상 못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반면에 경찰 직무집행법으로 막은 것에 대해서 단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전부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것도 불법은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실제 법의 판단은. 그렇다고 이것을 하는 것을 아예 못 하게 한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더라도 거거든요.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양쪽 다 가능한, 어떻게 보면 약간 모호한 영역이 있고요.

정책적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것 좀 약간 다른데, 혹시 이것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합의서 위반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 보세요.

목함지뢰 났을 때 8·25 합의인데 1항은 남북 당국 회담하는 거고 2항은 부상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넷째는 전시상태 해제, 다섯째 이산가족 상봉, 여섯째 교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전부 북한이 받아 준 거고 딱 하나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는 중단한다’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물어봤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합의서를 거꾸로 해석하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확성기 방송 해도 좋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합의서 금지행위가 아니고 합의서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남북이 합의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확성기나 전단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합의가 있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법률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게 되지 않습니까? 신고제, 허가제, 벌금이라도 규정해 놓으면 나중에 다음 정부가 무조건 허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임박하는 것도 없고 별문제 없고…… 막을 수가 없지요.

그리면 실제로 이것을 정부가 유연하게 정책적인 재량을 갖고 한다 못 한다를 통제할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열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나 만들어 놓았을 때 그건 결국 대북관계에서나 정부의 어떤 정책에서 굉장히 제한을 가하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법에서 이 전단, 확성

기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절차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떨 때 되고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법이라는 게 좋기는 한데 과연 이 전단, 확성기가 법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규정할 수 있는 것이냐. 실제로 아마 규정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처벌이나 각종 기준 같은 것을 정하기가. 임박하다, 급박하다, 피해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서해에 무슨 해안포가 열리고 각종 방사포가 포문이 열리고 야전에 포가 전개됐다 이런 상황을 봐야 임박한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임박했다고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경찰서장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다, 임박했다, 혹은 피해가 될 거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서장이라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상적으로 썼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를 과연 누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것을 법으로 규정을 써 놓았다?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복잡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어느 것이 꼭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명확하게 뭘 해 보려고 했을 때 쉽지도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을 일단 저는 먼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건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대북전단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한 게 한 2년 이상 가지요. 그렇게 실랑이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과잉금지라는 정신을 가지고 위헌판결을 해서 전단과 관련돼서는 법 개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김기웅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남북관계가 전쟁과 대결의 상태로 장기화하던 과거에 보면 우리도 보낸 전단이 있을 거고 북에서도 보낸 대남 빠라도 있을 거고 또 확성기 방송들이 그야말로 일상이었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주는 적대적인 효과 때문에 결국은 남북 당국 간에도 이와 관련 돼서는 상호 하지 않도록 합의가 도출됐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당국이 주도해서 하는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이 아니라 일부 북한 민주화를 꿈꾸는 탈북단체들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대북전단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야말로 북한 사회의 변화, 민주화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한 것인지 논란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게 접경지에서 북의 직접적인 사격과 같은 군사적 공격들이 빨발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들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북의 이상한 대응, 오물 풍선이라는 참으로 기괴하고 북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남쪽의 반응을 끌어냈다는 점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쪽, 남에서 볼 때는 너무도 기괴한 공격 수단이 발생을 했고. 또 이것이 국방 위의 논의 과정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휴전선을 넘어올 때 바로 사격을 해서 주저앉히는, 못 넘어오게 만드는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더니 우리 국방 당국의 입장은 그렇게 되면, ‘군사적인 사격이 북으로 떨어지게 되면 군사적 도발 행위로 곧 될 거고 또 남으로 떨어지면 우리 남쪽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실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고 있다가 남쪽에 떨어지면 안전하게 수거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이런 식의 참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답답한 답변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만……

결국은 오물 풍선이 됐든 대북전단이 됐든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나 위험사태로 촉발될 가능성이 많고 또 직접적으로는 남쪽 접경지대 주민들의 삶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있어서 현재에서 판결했다시피 과잉금지와 관련된 것은 처벌조항이 됐든 또한 금지의 대상과 지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면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법률안을 제안했다라는 이 법안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남북관계 안에서 이 법들에 대한 논의는 지난 2년간 계속 이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제가 이 법들을 다른 관점으로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법을 보면 어떤 식의 느낌일까를 봤었는데,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을 하나 만드려면 보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이 부분은 현재 소수의견 안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표현의 자유 자체를 막은 게 아니라 표현의 형식을 제한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전단을 위로, 북으로 날렸을 때 사실 북으로 도달하는 전단의 비율과 남쪽 영토에 떨어지는 전단의 비율을 보면 북으로 가는 게 더 많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전단의 내용을 제쳐 두고 만약에 제가 오산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풍선을 날려 가지고 뿌린다고 했을 때 사실 이 법이 보편적이라고 하면 저를 막을 수 있는 권리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권리로 생각을 해 보면.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의정보고서를 풍선으로 안 날리잖아요, 그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익명의 대중들한테 풍선을 날리게 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북을 타깃으로 하든 아니면 남쪽을 타깃으로 하든 법의 보편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절차들을 저희가 마련해놓을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나. 그게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경찰서장이든 아니면 관할 시장이든 신고하는 형태로 돼야지 최소한의 어떤 형식들을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법을 볼 때마다 어쨌든 표현의 자유라고 치면 오산지역에 제 의정보고서 날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 형식들에 대해서 이 정도 신고 절차를 만드는 게 법적으로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성락 위원님.

○**위성락 위원**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김기웅 위원님 말씀이 끝난 다음에 바로 했어야 효율적인데 우선 그걸 내포하면서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김 위원님 아주 오랜 통일 업무 경험에서 우리나라온 흥미로운 관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과거를 돌아보면 전단을 살포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고 그런, 경위가 복잡하다. 오히려 정부가 어떤 레버리지 내지는 운신공간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그걸 법으로 규정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이 오히려 제약이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달리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전단 문제는 절대로 못 하게 하는 것도 바른 선택지는 아니고 마구잡이로 해도 되게 하는 것도 또 좋은 건 아니다. 그

러니까 정부가 일정한 재량을 갖는 게 좋겠다,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가 복잡하게 결정했지만 하여튼 이대로 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고 표현의 자유 원칙에 위배가 되니 이대로는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이대로 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치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냐면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상황이 돼 버리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아무런 통제를 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헌이 됐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구잡이로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니까 그건 또 좋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같은 연장선에서 권영세 의원이 내신 법안은 현재 결정에 따라서 금지를 다 없애 버리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 그대로 가자는 거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마구잡이로 하게 두자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안은 우리 논의 자체에서도 옵션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머지 여러 가지 안들,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경찰서장한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통일부장관의 판단을 구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이 계속 염려하시는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이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통일부차관께서는 통일부장관이 판단하는 문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통일부의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통일부가 이 정부에서 신고받은 것 중에 10개 받아서 10개를 노(no)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개 받아서 7개를 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량권이 있고 만약에 또 정부가 바뀌어서 좀 더 유연한 정부가 오면 10개 받아서 7개를 오케이할 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재량권은 남는 문제다. 단지 요컨대 지금 이 상태로 두면, 현재에서 부분적인 위헌이 난 상태에서 이대로 두면 상황이 더 나쁘다. 그냥 전단을 날리고 싶은 사람들이 막 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한 헌법적인 규정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는 일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니 액션은 필요하다. 액션은 필요하면서 여전히 재량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방법 중의 하나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 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중간에 일정이 있어 나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는 게 자꾸 통일부하고 지금 정부는 이게 마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기존의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과하게 막는다는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단 자체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왜곡시키는지 저는 너무 답답한데요.

지난번 법사위 회의록에 박지원 위원께서 ‘현재에서 대북전단에 대해서 판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지나치게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단을 보내지 마라 이런 뜻이냐’는 것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한테 질문을 했고 ‘그렇다’는 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자꾸 연결시켜서 표현의 자유

때문에 이것은 허락된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위성락 위원님의 합리적인 사고와 로직에 대해서는,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정부를 보면 그러한 자율성을 전적으로, 오히려 아까 말하는 마구잡이로 조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제어장치가 이 정부에는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성락 위원님.

○위성락 위원 이 정부에 신고를 하게 하면 결과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김준형 위원 예.

○위성락 위원 저도 그렇게,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통일부장관과 외통위에서 논의를 해 본 바에 따르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위헌이었기 때문에 아무 할 것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부서, 국토교통부장관이라든가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 경찰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통일부장관에게 책임을 지워 줘야 되지 않느냐. 통일부장관에게 책임을 지워 줘서 이 법이 생겨나면 통일부장관은 움직일 수 없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타 법에 있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임무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가령 김 위원님이나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승인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런 법적·정치적 부담을 통일부가 지는 한 저는 완전히 불합리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이런 안을 내는 거고요.

또 하나, 과잉처벌에 대해서도 현재의 정신을 감안해서 지금 대부분의 제한들이 그렇고 저도 처벌 수위를 다 세분화해서 조정하고 감안해서 현재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인요한 위원님.

○인요한 위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지막 북을 한 5년 전에, 한 10년 전에…… 마지막은 5년 전이고 그전에 10년 전에 갔을 때 김관진 국방부장관 사진을 놓고 대검으로 찌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김관진 장관한테 ‘장관님, 참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 보니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과거에 20년 전까지는 북쪽에서 전단이 연희동, 제가 살고 있는 데에 막 무더기로 와 있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또 황장엽 씨를 몇 번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세계 하더라고요. 맞는 건지는 몰라도 선전에서는 남쪽이 졌다, 북쪽이 선전을 훨씬 잘했다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주민을 생각하면 위험하고 또 걱정스럽지만 과연 정부에서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결정을 정부한테 주면 첫째는 컨트롤이 안 되는 대북단체들이 풍선을 날렸을 때 어떻게 부인을 할 건가, 참 책임이 어려워요. 하여튼 영어로 디나이어빌리티(deniability), 내가 모르겠다, 정부가 하라 그리고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또 잘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빠져요.

그러면 북쪽에서 왜 그걸 컨트롤을…… 북쪽 정부는 모든 것을 북쪽 시작으로 봐요. 민간단체는 없어요. NGO도 다 정부예요. 그러니까 과연 남쪽 정부가 무책임하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시빗거리가 될 수가 있고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정부가 예스, 노 결

정권을 지방자치제가 됐든 통일부장관이 됐든 저는 정말 이 문제가, 차라리 뭐랄까 대북 단체들이 많은 경우에—저 자신도 강경은 아닙니다—좀 자체를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쓸데없이 자극도 하고, 북쪽을. 그러나 정부가 거기 개입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합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여야를 떠나서 어느 정부 또 앞으로는 야당이 또 정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참 어려운 문제예요. 과거에 북쪽 사람들은 우리한테 전단지를 참 많이 보냈어요. 아마 더 많이 보냈을 거예요, 우리가 북쪽에 보낸 것보다. 그런 것도 있고 확성기도 서로 틀어 놓고 시끄럽게 막 했는데 어쨌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저는 직접적으로, 전단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아까 제가 인용한 현재의 판결에 따르더라도 그걸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 지금 있는 안전법이나, 사실 냉전이 격화됐을 때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서독에서 체코로 보냈던 것이 비행기 사고로 이어진다는 체코의 항의로 미국과 서독이 합의해서 모든 것을 중단시킨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가 아니라 지금 남북이 거의 교전 상태에서 풍선을 보내고 확성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쟁, 아시다시피 심리전 행위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자기 말로 남한이 보내니까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우리가 안 보내면 북한은 안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항공안전법이나 다른 걸 통해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도 도모하고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까 위성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막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다 허용을 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저도 조금 단순하게 해서 말을 해 보면 남북관계 안에서 대북 비방 전단이 되니까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북에서 내려온 오물 풍선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걸 좀 다시 한번 단순화시켜서 얘기해 보면 어떤 홍보나 내용 전달의 표현을 위해서 풍선을 띄워서 서울 전역에 전단을 뿌리는 것을 비교를 해 보면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신고는 하게 돼 있잖아요. 신고는 해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집회의 자유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우리 헌법상의 자유기는 하지만 자자체나 여기저기 신고를 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듯이 당연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법의 핵심은 신고입니다. 신고의 주체가 통일부장관 혹은 경찰서 혹은 시장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내용이 정치적인 내용이라서, 남북관계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면 서울에서 풍선을 띄워서 전단지를 뿌리는 것과 형식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고하는 이 절차, 우리가 신고의 의무를 가지는 이런 법조차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저는 마찬가지로 제가 홍보하고 싶은 것들 서울 시내에 띄워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신고 없이 띄워도.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신고에 관한 절차들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이게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데 사실 그 부분을 빼고 형식만 놓고 보면 신고가 불가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신고하는 절차가 없어지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법에서 핵심적인 게 신고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안을 정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법들은 당연히 상정이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흥기원 위원님.

○**흥기원 위원** 현재 판결 요지는 한마디로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되어 있던데 전단을 작성해서 날리는 게 표현의 자유에 해당은 되는데 그것을 너무 과하게 처벌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한 건데 그게 어떠한 경로를 거치든 국민의 생명, 안전 그다음에 재산의 침해에 달하는 행위가 됐을 때는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날리는 게 그러한 결과로 초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책임이 있는 거지요,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신고하는 게 북한한테, 우리 정부가 결국 날리는 것을 신고를 승인해서 날렸을 때 그 것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 정부가 용인해서 날린 것으로 비난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날아가면 북한이 우리 정부는 책임 없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우리 정부가 방조하거나 또는 조장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항공안전법이나 또 국제민간항공 운수협약에 따르면 2kg 이상 뭔가를 매달아서 날려 가지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면 다 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사실상 손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것을 방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에 의해서 위헌판결이 났는데 그 위헌되는 부분을 피해서 얼마든지 법을 규정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도 결국은 국가의 책임을,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 또 민간항공 운수협약이나 또는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규율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건데 이것을 신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북한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건 더 모순이지요. 내용이 어떻게 됐든 대북전단 날리는 건 현재 법 위반이거든요, 우리 국내법이든 또는 조약이든. 그리고 또 현재에서 판결한 그것에 비춰 봐도 정부가 규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규율하지 말자고 하면 그 책임이 덜어지고 뭔가를 규율하면 책임이 더 커진다?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규율을 하는 게 맞고 다만 그게 표현의 자유나 또는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을 덜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북한으로부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규율하지 말자 이것은 가장 무책임한 정부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안을 내야 돼요. 통일부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제일 잘 알고 있는 통일부는 검토만 하고 있고 아무 안도 안 내는 게 가장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놓고, 이 정도 하면 현재 판결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덜 예민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도 덜 침해할 수 있고 또 항공안전법이나 국제조약도 충실히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 안을 만들려

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주무 부처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논평만 하고 아무 안도 안 낸다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인요한 위원님.

○인요한 위원 존경하는 흥 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네요, 저도. 안을 고민 좀 하세요. 고민 좀 해서 오늘 이 해법을, 피해 나갈 수 있고 모두가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제가 많이 상대했습니다. 외교관들, 특히 북쪽의 외교관을 사실 남한 외교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내가. 이것도 참 웃긴 얘기인데.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민간인하고 정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아까도 한 번 내가 언급했지만 모두 다 정부의 한 부분이라고, 자기 체제하에서 남을 또 똑같이 평가를 해요. 그것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하여간 처음에 말씀드리고 안 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오물 풍선은 16년, 17년에도 왔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온 건 아니고요 과거에도 온 적이 많이 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신고제 얘기를 하시는데 신고제는 허가제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게 실질적인 허가제로 운영되면 신고제가 아닌 거지요. 그리고 집회·시위 신고제도 보면 무조건 허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날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를 못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아까 항공안전법 얘기했는데 과거에 그것 검토해 보라고 몇 번 그랬더니 민통선·군사분계선 부근으로 날아가는 민항기가 없고, 그 신고서에 보면 전단이 떨어지는 곳의 낙하지점과 회수하는 방법까지 신고하게 돼 있어요,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면. 사실상 북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질지 회수할지를 신고서에 미리 사전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민항기가 다니는 지역도 아니고 실제 제삼국으로, 다른 나라로 넘어갈 경우에 그 나라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서 지금 국토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안을 의견을 처음에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사이에 된다라고 해서 지금 2kg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진짜 그게 맞는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들여다봤는데 해석이 그렇다 하니까 실정법이라고 또 그런가 보다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실제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것도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부가 안을 낸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삭제하는 것도 아까 잠깐 오해가 있는데 삭제한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 과거에 없을 때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많이 막았거든요, 실제로. 과주 쪽에서 다 들어와서 막고 입구에서 막고 경찰이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의지가 없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것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내면 혹시 여기에 신고, 허가, 처벌, 과태료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통일부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신고제라는 건 결국 그 사람들이 언제 뭐를 한다는 걸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북한이 이걸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 얘기 없이 제가 문구를 하나 만들어 보면 ‘통일부장관은 민간의 대북전단이 우리 국민들의 신체나 재산상에 급박하고 현존하는 임박한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 문구를.

이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통일부장관이 뭐를 하라는, 분명히 맨 더토리(mandatory)로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치는 경찰한테 요청하는 거고. 임박하냐 안 하냐? 서해안 함포, 그러니까 해안포가 열렸느냐, 약전이 전개됐느냐, 저쪽에서 방사포를 쏠 동향이 있느냐, 군사동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치를 안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실정법에 따라’ 조항을 분명히 넣어도 좋고요, ‘실정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든가. 하여간 그런 문구를 하나 넣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막 전단이 위험하게 한다지만 정부가 군에서 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번에도 그랬지만 목함지뢰 때도 확성기 쪽으로 3발 쐈잖아요, 우리 21발 쐈고. 정부가 나서서 지금 확성기를 틀고 있는데 민간이 뒤에서 몇 개 날아가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보면 어이가 없을 거예요. 자기들은 아예 대놓고 하면서 내가 이것 하나 날리는 거 가지고 못 하게 한다고 지금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민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저희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성기든 전단이든 같은 걸로 봐야 되고,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고 이 부분에서 어쨌든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규정을 하는 거고 그 판단은 어쨌든 간에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임박하다’, ‘현존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임박한 위험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오물 풍선 날아온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판단은 그래도 정부 관계 부처에 이렇게 위임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 여기서 삭제하자는 안도 수용하시기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여기에 신고·허가제 넣자는 안도 정부 측도 그렇고 수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아까 위성락 위원님 하신 대로 아무것도 못 하고 가면 결국에는 또 그냥 막 하는, 지금 걱정하시는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는 대안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위헌판결 났으면 입법을 해야지요. 하는데, 문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표현을 넣어도 좋고요, 현재 판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통일부장관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해서 경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든가 문구는 정확하게 다시 만들어 봐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절충안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복잡한 얘기 안 하고 정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다들 걱정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정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상 어떤 위중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접경지역 주민 안전이 위중하다는 판단을 할 경우라면 지자체장이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하여튼 누가 해야 될지 같은 것들은 유관 부처하고 논의를 해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성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성락 위원** 지금 우리 앞에는 2개의 새로운 현실이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현재의 판결입니다. 가만둘 수는 없습니다. 현재가 위헌 요소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지금은 남북관계발전법이 일종의 리걸 림보(legal limbo) 상태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현실은 그러한 리걸 림보 상태를 통일부가 제가 볼 때는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걸 기화로 두 너씽(do nothing)으로 가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고 나는 모른다, 현재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빠져 버리는 건데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위태롭게 될 수 있고 남북관계는 큰 충돌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사안 다 통일부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가상적으로 통일부가 지금처럼 두 너씽을 하지 않고 현재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남북관계 충돌을 막는 노력을 계속했다면 우리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대로 가도 됩니다. 좀 보완책을 말하자면 리걸 림보를 놔두고라도 행정적인 보완책으로 이걸 꾸려 나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한 항공안전법이라든가 무슨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냥 둘 수는 없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웅 위원께서 제기하시는 그런 방안도 저는 고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문구들하고 지금 김 차관님 제기하시는 방안들까지 잘 조절해서 뭔가 만들어 가지고 이 두 가지의 큰 우리한테 다가온 현실을 넘어가는, 극복하는 방법을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관련해서 저도 위원으로 먼저 좀 발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별칙규정을 하향한다든가 사전신고제를 한다든가 여러 대안 말고, 전문위원 보고서에 뭐가 있느냐하면 아까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이 조항을 연결하는 대안을 얘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그 의견을 냈을 때 생각하신 게 김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생각이셨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궁금했거든요, 하나의 대안으로 써 놨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사우** 대체적으로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현법재판소 판결을 제가 주말에 세 번쯤 읽었습니다. 세 번쯤 읽고 잘 이해가 안 가서, 다행히 제 집사람이 행정법 교수다

보니까 강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해가 좀 됐는데.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큰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약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약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걸 제약하는 대표적인 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시법이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판결은 뭐냐 하면 당신들이 이걸 규제하려고 하면 집시법을 모델로 해서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판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가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한하면 안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신고는 신고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신고의 의미인데 이상하게 우리가 판결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신고 제도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만 하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거를 즉자적 신고라고도 하고 즉각적 신고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쓰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고를 받은 부서가 수리를 해야만 신고의 효과가 성립하므로 사실상의 준허가제 비슷한 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유민주 사회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즉자적인 신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마음껏 데모를, 시위를하거나 할 수 있지도…… 그렇게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요건이 되면 무조건 시위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조건하에서는 제한을 하는 어떤 중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만드는 것을 아마 헌법재판소는 판결하면서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를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그런데 현재가 그거를 꼭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등’이라는 말을 써서 자기들이 예시하고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 집시법 비슷하게 가는 건데 그거는 입법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자기들은 이를 규제하려고 그러면, 지금의 규정은 과잉 규제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훨씬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판결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집시법을 모델로 해서 제시를 한 건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집시법처럼 이를 가게 되면 사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면 이건 무조건 허용해야 되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 대안일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아마 지금 위성락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던 그런 효과는 가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낮의 무슨 시간에는 괜찮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시간에 하면 되는 거니까.

또 하나는 김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안,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이 법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정부에 완전한 재량권을 주게 되는 대신에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 정부가 좀 플렉서블(flexible), 막을 수 있는 대안은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두 가지 정도를 놓고 저희가 생각해 오시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제도로 지금 다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위헌 판결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것도 검토를 같이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집시법 얘기하셔 가지고 저도 관련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집시법 관련해서도 신고를 하면 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질서유지선의 설정이라든지 확성기 사용의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에 형식상의 제한들을 뒀습니다. 집시의 형식에 제한을 뒀던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북전단도 이렇게 가진 정치적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형식상의 제한을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벌금이 나오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법안들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접경지대의 국민들이랑 서울시 국민들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풍선을 날려 가지고 전단을 날릴 수 없다면 그리고 아까 확성기 얘기하셨는데 서울시 안에서 확성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굉장히 큰 소리로 뭘가 어떤 메시지를 날리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 저는 접경지대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논리로 가게 되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확성기도 그렇고 일정 소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 소음 기준 이상의 소리가 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대북 확성기는 그 기준을 훨씬 더 넘어선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논의들은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북 확성기랑 전단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접경지대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될, 위해요소가 없어야 되는 것은 서울에 있는 국민들이 그 위해요소가 없어야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접경지대에서 대북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단을 날리는 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서울에서도 날리는 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북전단 말고 다른 형식의 전단 메시지를 날리는 것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고 이 신고 절차들을, 이런 굉장히 큰 여파가 있는 법안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확고히 해야 되는 게 저희가 가진 입장인 것 같고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에서 신고를 통해서 이런 통제선을 긋든 혹은 경찰서장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장이 긋든 어쨌든 동일성의 원칙들, 접경지대가 아닌 서울시에서도 해도 되는 행동, 해도 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똑같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접경지대의 특수성은 이런 부분들 감안하라고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국민들이 똑같이, 서울시의 국민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동일한 어떤 행위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면 접경지대에서 가능하고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접경지대에서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현재 판결은 여기 남북관계발전법상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만 심의해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 때 아마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문제가 돼서 여러 군데에서 검토를 해 보니 거기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게,

고무풍선에 매달아 가지고 날리는 게 첫째로는 항공안전법의 위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군에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서 그런 걸 날리는 게 또 법에 위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심각한 손상이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영향을 주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현재는 대북전단에, 거기에 전단을 넣어서 날리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하나만 본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법 위반 사항에 걸리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것, 예전에는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입한 국제조약에도 위반되는 거고 항공안전법에도 위반되는 거고 또 군에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날리는 거기에도 위반되는 거고.

그런데 대북전단을 통일부가 담당하니까 얼마든지, 아까 김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심의할 때 항공안전법 또 비행금지구역의 비행 금지 그다음에 접경지역 생명, 신체, 안전 보장 등을 고려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기관들에게 이런 것을 철저하게 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얼마든지 저는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규제하는 것이 국가에도 이익이 되고 또 국민 생명, 안전에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한데 오직 하나 표현의 자유라는 그거를 구실로 진짜 손 놓고 전혀 규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법적으로 규율하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정부가 법 규정을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다 규율하고 있다 그러면 입법의 필요성이 덜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입법 미비를…… 사실 미비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토부나 국방부나 다 이걸 해야 되는데 정부의 그 방침 때문에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법적으로 규율을 하려는 건데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이거는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저는 김기웅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면서 오히려 신고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 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보면 지금 것들을 반영해서 저는 아까 우리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접근법 자체는 동의를 하고 그러나 어떤 내용이나 자구로 하는 데 대한 상당한 신중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추후 논의로 하는 게, 오늘은 결론은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건** 인요한 위원님.

○**인요한 위원** 통일부에서 좀 안도 고민하시고 우리도 고민하고 다 고민하고. 이러다가 계속 시간만 갈 것 같아요.

○**홍기원 위원** 위원장님이 우리 법안소위 전체의 뜻으로 통일부에 지시를 내려 주세요. 통일부에서 방금 나온 의견을 토대로 안을 만들도록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회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그 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게 정파적으로 싸우기만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법이 만들어지면 어느 정부든 다 지

켜야 되는 거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지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논의를 토대로 해서 통일부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우리 소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회에서도 통일부가 대안을 만들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 김사우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제가 통일부 관계자하고 이 법안들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한번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입장은 엄청나게 완고합니다. 아예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수준입니다.

○김준형 위원 약속을 받으시지요.

○홍기원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시를 해 달라는 거예요, 법안소위 전체의 뜻으로. 여기 통일부 실무선에서는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소위원장 김건 통일부차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결정문도 저도 좀 잘 봤지만 그러니까 지금 논의된 부분 중에 얘기 나오지 않은 부분 중의 하나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이 북에, 어떻게 보면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서 있는 것인데 북이 딱 적시를 해서 대북전단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북전단이 문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많이들 논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북이 다른 어떤 저희의 굉장히 정당한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도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걸 규제할 수 있느냐 그런 법리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임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금지를 하고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현재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시법하고는 약간 다른 게 접경지역의 위험을 만들어 오는 책임의 주체가 북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약간 사례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준형 위원 아닙니다. 저거 틀린 말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일단 통일부차관 말씀 끝나고 또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복잡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아니, 오물 풍선 날아오기 전에도 접경지역 사람들이 다 불안해했습니다. 오물 풍선이 접경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위험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아닙니다. 차관님,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건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차관님은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도 안 들으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현재의 판결은 순수하게 당시 남북관계발전법의 해당 규정만 가지고 판단한 거고 지금은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항공안전법이나 또 우리가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또는 군에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위반이나 이런 내용들까지 새로 다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규율한다면 현재의 판결을 충분히 충족하면서도 규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만 자꾸 얘기하시는 데 그 사람들은 지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거를 규율하는 게 통일부가 아니다 뿐이지 국토부가 규율해야 되고 국방부가 규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북전단은 통일부가 담당 부서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더 고민을 해서 하든 안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자꾸 다른 협행 실정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없는 것처럼 상정하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북전단 보내는 게 국민의 생명·안전에 침해가 계속돼 왔잖아요.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그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입법까지 한 거고요. 과거에 그때 입법한 게 위헌이 돼서 그런 거지 입법의 정신까지 현재에서 위헌 판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그 태도는 좀 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에서도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당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걱정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안전법이라든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존재하는 법들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현재 결정문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가능한지를 저희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해가 없으셨기를 바라는 말씀 드리면 책임주의 부분이 좀 언짢으셨을 수는 있는데 현재 결정문에서도 책임주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고 북에 어떤 일정 부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로서도 안을 만들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언급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했던 얘기는 우리가 풍선을 보내서 북에서 오물 풍선을 다시 보내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 피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전혀 얘기한 적이 없고요.

이제 접경에서 풍선을 통해서 전단이 보내질 수가 있고 그게 남쪽을 포함한 한반도, 한반도 부속 영토에 보내질 수 있으면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대북전단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 문건들을 여기서 보낼 수 있지요. 민주당에서 풍선 날려 가지고 서울이나 전국에 당원가입서를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게 형식상의 제한이 있는 거지요.

형식상의 제한은 접시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폴리스라인 지켜야 되고 확성기를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풍선으로 전단을 보내는 과정도 전단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의 자유에서도 형식상 가이드라인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 문제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게 완전히 무작위로 보낼 수 있게 되면 비슷한 형태의 다른 메시지, 북으로 보내는 메시지하고 다른 메시지를 한국 내 곳곳에 보내는 게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주민의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계속 남북관계 속에서 보니까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서울에서 안 되는 거면 접경지대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방안이 있을지 현재 결정문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 위성락 위원님.

○**위성락 위원** 차관님 답변하실 때 자주 귀에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접경지역 주민에 국한하지 말고 국민, 헌법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라고 개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단살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 표현의 자유를 발현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북한에서 누가 얼마나 많이 그걸 보고 그게 어떻게 변화를 야기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기대이익과 그것으로부터 유발되는 북한의 후속 대응과 남북한 간의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교량해 보면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충돌 가능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위협은 국민 전체에게 오는 거고 접경 주민도 국민입니다. 너무 그 소수의 몇몇 사람이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가 지키려고 하는 헌법정신의 또 한 부분입니다. 또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입장을 다시 정립하여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래도 크게 봐서 브로드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된다, 고쳐서 이 법적인 미비 상태도 해소하고 그리고 남북한 관계를 위험하게 끌고 가는 일도 방지하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일부가 받아 내야 하고 만약에 못 받아 내면, 좋습니다, 통일부 없이 우리가 논의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람직한 길은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김준형 위원** 빽빽 도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추후에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차관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심의한 지가 거의 세 시간이 돼서 대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회를 한 20분 하고 다시 검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한 30분 정도 해서 의사일정 20항까지 좀 하고 오늘은 심의를 중단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너무 힘드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차후의 회의 일정으로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요한 위원** 그냥 끝내지요, 쉬지 말고.

○**김준형 위원** 끝내지요.

○**소위원장 김건** 5시 반까지?

○**김준형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끝낸다는……

○**소위원장 김건**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기웅 위원 그러시지요.
- 김준형 위원 다른 분들은?
- 위성락 위원 그럼 어떻게, 남는 것이……
- 김기웅 위원 다음 법률소위에서 또 한다는 거지요.
- 소위원장 김건 의사일정 20항부터 다음 소위 때……
- 위성락 위원 20항부터 그 나머지는 남는다는 거예요?
- 소위원장 김건 예, 다음 소위 때……
- 김기웅 위원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것들은 아닌데.
- 인요한 위원 쉽게 하면, 그냥 해 버리는 게 나아요.
- 소위원장 김건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위성락 위원 그냥 하는 게, 끝을 내는 게 어떻습니까?
- 소위원장 김건 원래 의사일정 전부 다 정회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시겠습니까?
- 위성락 위원 예,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는 거로 생각하시고.
- 소위원장 김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피디하게 진행하시는 데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해당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사우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합의서 파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되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상대가 있는 합의서를 어느 일방이 폐기할 경우 이를 상대방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법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6조에 따르면 조약은 폐기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 또는 조약의 성질상 묵시적 종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폐기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60조에서는 양자조약의 한쪽 당사자가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중대한 위반에 대한 개념 요건, 양자조약의 종료·정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남북합의서의 폐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제명 ‘남북관계 발전’ 및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북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이 법의 제정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건 그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차관 김수경 통일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는 효력 정지와 달리 한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으로 합의가 종료되기 때문에 남북관계 측면에서의 합의를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남북합의서에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폐기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 파기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개별 남북합의서에 폐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토론을 종결하고 계속 심사해 나가도록, 정부 측 반대 입장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로 현행 정부에 추가하여 자치단체를 명기하는 내용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명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증진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해당됩니다. 정부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각종 책무를 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에 보다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럼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통일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남북관계 발전 관련 정부의 책무 전반에 대해 지자체를 책무의 주체로 일괄 병기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 관련 사업이 전국적·통일적 사무가 요구되고 국가 존립과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제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령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역시도 남북교류협력법상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사실 두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남북관계를 떠나서 외교 혹은 다른 나라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예전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연결뿐만이

아니고 도시 간의 연결들이나 지방자치단체끼리의 협력들이 어쨌든 세계에서 전반적인 추세로 만들어져 있고.

사실 통일부 의견대로 똑같이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왜 국가를 매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세계적인 대전환 과정 안에서 국가 외에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북한이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는 다른 수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르락내리락할 때 어떤 때는 인도적 협력, 어떤 때는 단절된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도 다른 한편으로 최소한의 어떤 협력에 대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남북관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북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랑 대안적인 어떤 협력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는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 중요한 연결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정부가 가지는 어떤 정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 다른 관계들이, 협력의 채널들이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른 위원님.

○**김기웅 위원** 제가 할게요.

○**소위원장 김건**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말씀하신 것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남북관계가 정말 정상적으로 발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간다면 뒷부분의 교류협력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주고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건 당연히 방향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보셨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해 오신 내용이 오히려 잡음이 많이 생기고 또 북한이 이걸 역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주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을 갖고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검토해도 되겠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개정해야 될 만큼 절박하달까 그런 이유들은 아니지 않느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추가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도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21항도 계속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조문대비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물품 등 반출·반입의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시도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승인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남북교

류협력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자체의 사정에 적합한 맞춤형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등 남북관계의 개선에 긍정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물품 등의 일부라 할지라도 각기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경우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저하될 수 있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물품 등 반출·반입 승인권자가 통일부와 시도로 이원화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보완을 위해 시도가 직접 사업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정·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도지사의 물품 등 반출·반입 승인 권한의 주요 내용과 한계 등을 예측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뒤 그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수경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남북한 분단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물품 반출입은 단순한 교역이 아니라 국민 안전, 국가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위임하기는 다소 곤란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가 반출입을 신청한 경우 지체없이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17개 광역단체의 장이 개별적으로 물품 반출입을 승인할 경우에 물품 반출입 운영의 일관성과 신청인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은 대북 제재의 준수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자체별로 반출입을 승인할 경우에는 제재결의 이행 관리감독에 다소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앞의 법안이랑 패키지 법안이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적어도 인도적 지원, 인도적 협력 부분 등 남북관계 경색 정도에 따라서 너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해 보면 결국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아니, 전략상 남북 경색기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일부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인도적 협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특히 다른 때보다 이렇게 남북이 경색돼 있을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남북이 경색돼 있을 때 이런 지자체를 통한 인도적 협력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최소한의 협상력을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의 법안에 찬성하듯이 이 법안도 패키지로 저는 찬성 의견을 밝히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김기웅 위원 저도 한번 또 해야겠네. 하셨으니까 나도 또 해야겠네.

○소위원장 김건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말씀은 다 맞는 거예요. 방향은 맞는데, 실제로 현장을 보면, 중국을 예를 들면 우리가 보냈는데 우리 이름을 안 쓰고 중국 사람 이름 써서 보내면 받는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이름도 바뀌어지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일반 민간이나 일부 경험이 적거나 뭔가 정확한 정보를 안 가지신 분들은 이용당하는 사례도 많더라. 뭐라 그럴까요, 좀 안 된 얘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전문가들이 옆에서 관여해 주고 도와주는 부분, 절차가 필요하고 알아서들 하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혼선도 있을 수 있다. 방향은 맞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건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주 논의에는 찬성하는데요. 조금 보완이랄까 경과규정을 생각해 보면 전문가 쪽 집단이나 아니면 국가가 승인권을 주되 정부와 지자체 간에 협의기구가 있으면 중간에 많이 협의를 하면서 맹점들을 좀 커버를 해 줘서 오히려…… 그러나 주체는 양쪽에서 다 할 수 있게 좋은 아이디어나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나중에 논의하면 조금 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더 의견 있는 위원님들 없으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2항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을 바탕으로 계속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 당국이 대북전단과 대남전단을 중단하고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남북합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각각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대체토론 종결 후 협안질의 시 관련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시 드라마나 가요 영상이 포함된 USB를 같이 보내고 있어 저작권법 등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바 이에 관해 통일부는 문체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다음으로 항공안전법에 따를 경우 대북전단 2kg 이상이면 국토부 허가사항이고 이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통일부가 자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 중 대북전단 살포단체의 대표도 포함되고 있는바 실정법 위반 시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 취지는 남북한이 상호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및 대남전단 살포로 인해 긴장과 대결 국면이 지속되고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위해 남북한 당국 모두에게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과 남북합의 정신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의 중지 및 한반도 평화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의 동 결의안은 주문 1과 주문 2 모두 그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관련 부처 간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수경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수호라는 결의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전단 등의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활동으로 그 자체가 직접적 위험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고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북한 도발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단 등 살포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수 의견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반복적으로 9·19 군사합의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음을 감안할 때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제가 대표발의한 3인 중에 한 명이라서요. 앞의 대북전단이,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자체가 지금의 긴장 구조를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서 양쪽에 다 촉구하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는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촉구하는 건 저도 당연히 좋은 건데요. 이런 것만 좀 고려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게 마치 한반도 평화에 남북전단이 아주 중요한 위해요소인 것처럼 두드러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양비론입니다.

이게 지금 한반도에서 남북이 똑같은, 너도 나도 똑같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또 국제사회에…… 그러니까 전단이 지금 한반도 평화를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그다음에 남북이 똑같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양비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히려 대안을 내면 지금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대화거든요. 8·15 경축사에서 대화도 제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북한한테도 남북 간 대화에 빨리 나오고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로 풀고 군사적 긴장 완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만나서 해결해라. 오히려 이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 남북이 노력을 해라. 대화를 통해서 빨리 협안을 해결하고 이 속에서 서로가 적대시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결의라면 저는 충분히 취지에 맞는데 그런 것들은 다 없고 핵실험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이거 빠지고 그냥 전단만 양쪽에 날리는데 아주 위험하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오해의 소지를 어쨌든 국제사회나 우리 국내에 줄 수 있다……

그래서 좀 표현을, 만약에 정말 평화나 남북관계의 어떤 그런 정상화를 촉구하신다면 제가 말하는 그런 취지로 쓰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충분히 지적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는 두드러진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 대남·대북 전단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인디케이터(indicator)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제일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반도, 같이 대화하고 평화 하자는 말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게 구체성을 띠지 않으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하나의 구체적 사안으로 풀 수 있는 열쇠라고 본다면 제목은 바꾸셔도 좋지만, 나중에 그건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꼭 그것이 이것만이고 다른 건 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아까 차지호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지 않으셨나요? 안 하셨나요? 또 다른 위원님……

인요한 위원님.

○**인요한 위원** 이 사람들 저기 북쪽에 가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나라 옥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정부를. 노골적으로 옥을 해서 점심 먹다가 두 번을 제가 그랬어요. 각각 이명박·박근혜 때 ‘당신 수반을 여기 와서 내가 옥을 하지 않았다. 나는 남쪽에 사는데 우리 수반도 당신이 옥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에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아예 이명박하고 박근혜 대통령 옥을 안 했어요. 완전히 멈췄어요.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거하고 북쪽 평양이나 이런 데, 어디 지역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순수하게 공평성을 따져서는요 북쪽에서 우리 옥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전단지 얘기를 오늘 편입돼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데 굉장히 심해요, 우리 옥하는 게 우리가 그들을 옥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거 하나는 염두를, 여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좀 기분 나빠해야 되고 개탄스러워해야 할 거는 굉장히 심하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전단, 우리의 표현을 맨날 문제를 삼고 그쪽의 표현과 그쪽의 행동은 좀 봐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처럼 거기서 단호하게 수반 옥하지 마라, 우리 다른 것부터 서로 존중하면서 다른 것부터 인정하고 풀어 나가자라는 형평성, 공평성, 어떤 페어(fair)한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들이 우리에 비하면 가난한 동생이지요. 또 그 나라의 국민은 저는 정부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보면 제일 큰 실수가 정부하고 국민을 도매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는 옥하고 싫어해도 돼요. 그러나 헌법상 제가 알기로는 북쪽의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균형

있는 생각과 균형 있는 비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결국 이 결의안 제안의 취지는 우리 정부가 또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방조하고 또는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도 북한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려는 좋은 뜻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통일부장관이 외통위 석상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문구를 대북전단 날리는 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고무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그거를 대북정책·통일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장관이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더 신나서 대북전단 날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도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에요. 대북전단 날리는 거 그날도 저를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항공안전법에도 위반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인 국제조약에도 위반되고 국방부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날리는 그런 행위, 거기 그 규정에도 위반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생명, 신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렇게까지 중요시하면서 이런 실정법 위반이나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외통위 석상에서 말씀하셨어요, 장관이.

지금 오늘 차관님이 얘기하시는 여러 맥락도 가만히 들어보면 장관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차관님이나 밑의 실무자들은 뭔가 조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적어도 통일부장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런 결의안을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을 통일부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저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결의안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구체성이 중요하다는 말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통일부에서 이 결의안을 보고 검토의견을 냈을 때 저는 통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내고 싶다는데 그러면 통일부에서 가장 찬성을 해야지요. 통일부에서 찬성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어떤 문구가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오든지 혹은 말씀하셨던 대로 대남·대북 전단으로만 축소시키면 이것은 지금 한반도의 평화롭지 못한 상황의 한 일면밖에 안 되니까 다른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포함을 시켜 달라고 얘기하시든지, 통일부의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 얘기하셨던 거는 좀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우리가 지금 북한과의 평화실현을 막고 있는 중요한 우리 쪽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으로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 사례 얘기들이 포함돼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하고 통일부에서 또 검토의견을 이 결의안이 어떤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남북평화 실현을 위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함께 의견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이건 통일부를 지원하는 결의안인데 왜 반대 의견을 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소위원장 김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도 계속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관한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경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 건 김기웅 김준형 위성락 이용선 인요한 차지호 홍기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 김사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2차관 장인선

조정기획관 송시진

인사기획관 황소진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진동

영사안전국심의관 이재용

통일부

차관 김수경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인권인도실장 강종석